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보 건 복 지 위 원 회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주 요 업 무 보 고

2020. 9. 2.

서울시복지재단

Ⅰ. 일 반 현 황

1 기 관 현 황

☐ **기 관 명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 홍영준)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 **설 립 일 :** 2003. 12. 31

☐ **설립형태 :** 재단법인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 **설립목적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범위**

①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② 평가·심사 및 인증 ③ 교육 및 자문 ④ 프로그램 개발·보급 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⑥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⑦ 국내외 복지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⑧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⑨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⑩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⑪ 국가·지자체, 민간단체 위탁사업 등

☐ **시설규모**

○ 건축면적 967.12㎡, 건물연면적 10,830.25㎡

10층	대표이사실, 정책연구실Ⅰ, 경영기획실, 회의실, 책마루
9층	지역복지통합본부, 감사실, 소통전략관, 열린마루, 노조사무실
8층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정책연구실Ⅱ
5층	대회의실, 회의실1~5

2 예 산 현 황

▢ 예　　산 : 27,06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27,067	계	27,067
출 연 금	23,448	정책사업비	9,583
잉 여 금	2,692	수탁운영비	504
사 업 수 입	504	기관운영비	15,537
사업 외 수입	423	성 과 급	1,373
		예 비 비	70

▢ 기금 운용 : 18,02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18,024	계	18,024
출 연 금	13,791	사 업 비	16,049
기 부 금	100	기금관리비	3
잡 수 입	1,791	기금적립금 등	1,972
이 월 금	2,342	반 환 금	0

※분야별 사업비 현황(세출예산 중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사업비 구성			기금회계 사업비 구성		
예 산 과 목	사업비	비율%	예 산 과 목	사업비	비율%
합 계	9,583	100	합 계	16,049	100
선도적복지정책개발	1,344	14	서울꿈나래통장	1,380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양성	1,645	17	희망두배청년통장	9,844	61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서비스 확대	3,590	37	장애인이룸통장	3,924	24
동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	188	2	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760	5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498	5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141	2
변화와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2,319	24			

3 임 원 현 황

☐ 총 12명(대표이사, 당연직이사 2명, 비상임이사 7명, 당연직감사 1명, 비상임감사 1명)

직 책	성 명			임 기	현 직
이 사 장	1		김 종 해	'18.11.01.~'21.10.31.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표이사	2		홍 영 준	'18.09.21.~'21.09.20.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당 연 직 이 사	3		정 진 우	'20.01.01.~발령시	• 서울시 복지기획관
	4		이 상 훈	'20.01.01.~발령시	• 서울시 재정기획관
선 임 직 이 사	5		장 지 현	'17.10.20.~'20.10.19.	•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6		박 은 숙	'18.03.22.~'21.03.21.	• 드림씨티 다문화공동체 이사
	7		윤 홍 식	'18.09.21.~'21.09.20.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8		신 용 규	'19.05.01.~'22.04.30.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9		장 재 구	'20.05.28.~'23.05.27	• 중앙사회복지관 관장
	10		문 유 진	'20.05.28.~'23.05.27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당 연 직 감 사	11		박 기 용	'20.07.01.~발령시	•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선 임 직 감 사	12		장 윤 미	'19.05.01.~'22.04.30.	• SLK법률사무소 변호사

4 조직 및 인력

▢ 조 직 : 1전략관 · 2실, 2본부 · 1실, 3센터 · 1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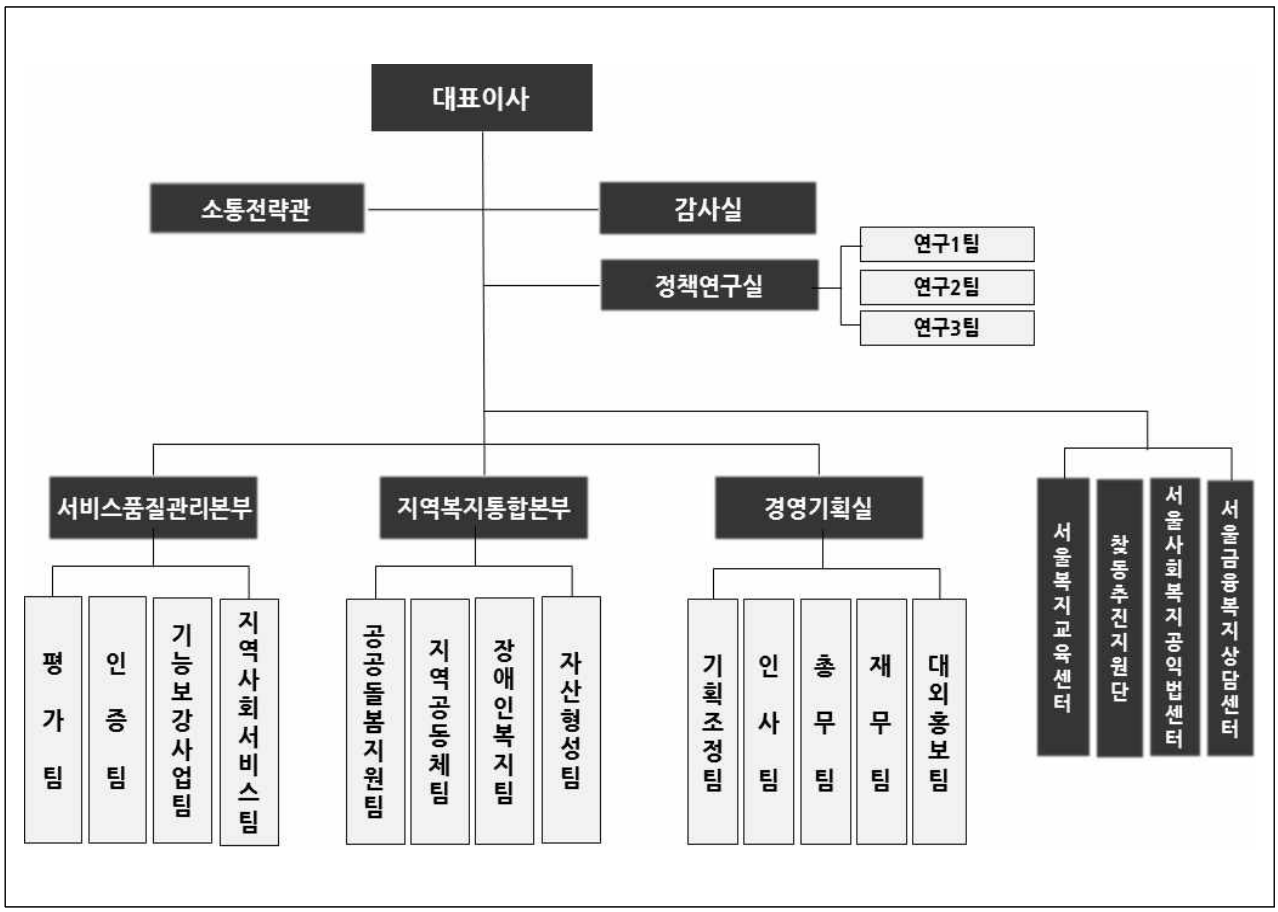

▢ 인 력 : 정원 177명 / 현원 176명

('20. 7.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대표이사	소계	사무직군·상담직군							미화직군	임피제 별도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177	1	176	1	10	22	26	27	56	32	2	-
현원	176	1	175	-	10	23	25	21	38	54	2	2

※ 계약직 23명 별도

Ⅱ. 운 영 방 향

1 운영 비전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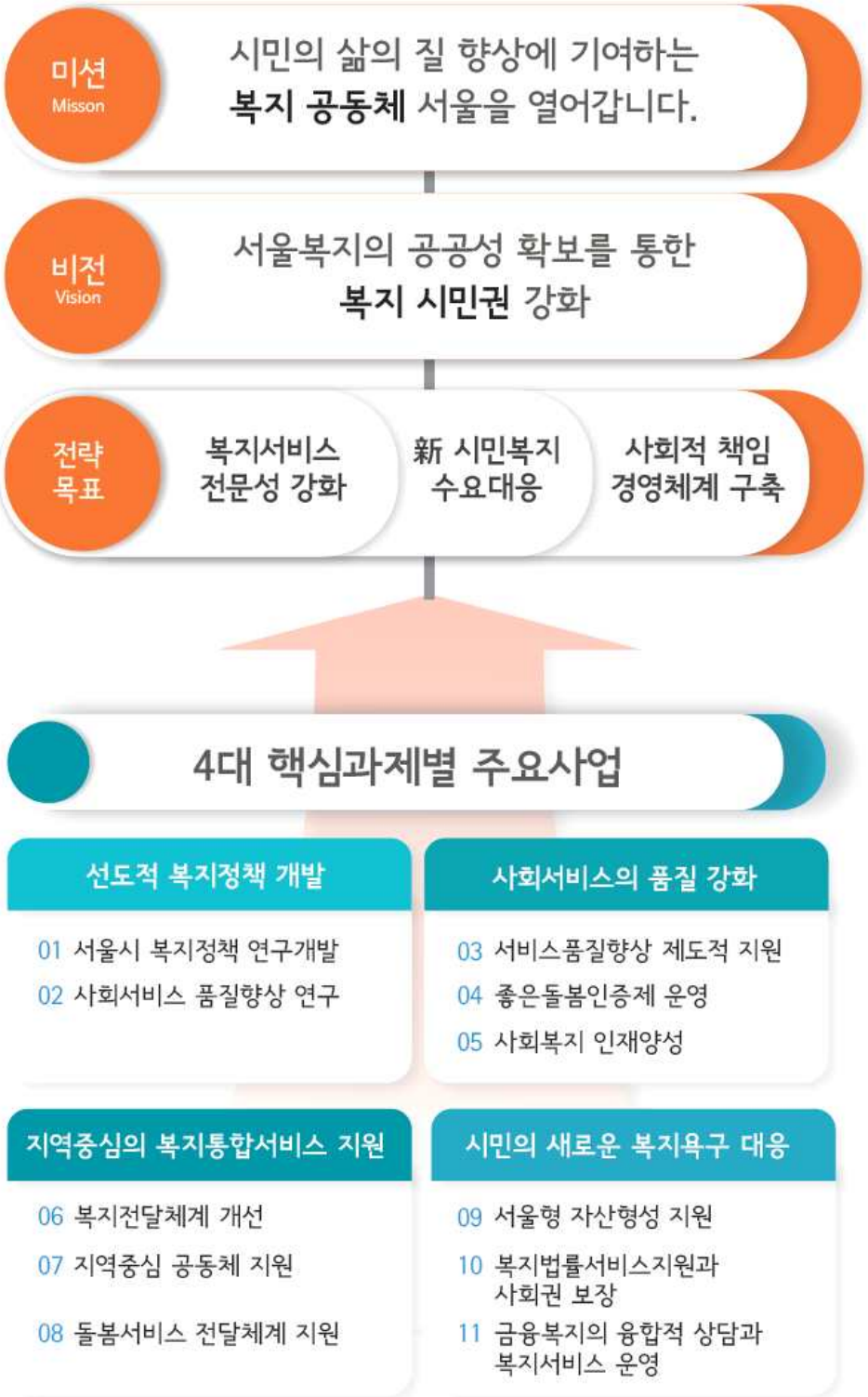

2 주요 성과목표

1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 민선 7기 핵심 복지정책의 정교화 및 미래복지 이슈 개발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 개발 및 운영기준 마련

2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

- 서울형복지시설 평가에 전문평가요원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성 및 합리성 확보
- 전국 최초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서울형 인증제 안착 기여
- 찾동 2.0 교육전담기구로써 역할 및 기능 강화('19년 KPC 용역 ⇨ '20년 교육센터 지정)
- 돌봄SOS센터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역량 지원('19년 1,182명 ⇨ '20년 1,654명)

3 지역중심의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 공공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찾동 사례관리 구단위 지원체계 구축(시범사업 3개구)
- 복지공동체 사업 협력체계 강화(나눔이웃 324개동, 사회적고립 120개동)
- '고독사'예방을 위한 주요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12개소 지원)
- 자립희망 장애인 탈시설 지역자립 지원 확대('19년 281명⇨ '20년 315명)
- 돌봄SOS센터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돌봄네트워크 지원 확대

4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 통장사업의(청년 · 장애인 이룸) 선발관리 및 참가자 지원 강화
- 법률취약계층 사법접근성 및 권리보호 강화(공익소송 및 자문 목표 390건)
- 가계부채 규모관리 상담 질 향상을 위한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하반기, 400명)
- 금융복지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서울금융복지투게더' 활성화

3 주요 성과지표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8	2019	2020	2021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연구결과 정책활용도	건	19	20	21	22
	연구결과 대외인지도	건	73	87	91	95
사회서비스의 품질강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수행 및 준비) 달성도	%	100 (253개소)	100 (118개소)	100 (57개소)	100 (253개소)
	서울시 의뢰사업(기능보강) 달성도	%	100 (746건)	100 (740건)	100 (700건 이상)	100 (700건 이상)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교육연인원	명	-	1,182	1,654	2,000
	공유 참여회원 수	명	5,188	9,636	10,600	11,660
지역중심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구단위 지원체계 구축	구	-	-	3	5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대학운영	동	10	20	30	50
	복지공동체사업 실무자교육 현업적용도	점	86.6	87.9	88.0	88.2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인력 교육인원	명	751	943	1,037	1,089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선발	명	2,000	3,000	3,000	3,000
	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선발	명	957	733	1,000	1,000
	금융복지상담 건수	건	22,675	23,641	24,000	24,250

Ⅲ. 주요사업 추진내용

1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2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

3 지역중심의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

4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1.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1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2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연구

1 시민의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서울형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서울복지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체감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착화된 사회적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25년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중장기 계획 수립

○ 초고령사회 어르신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서울시 어르신복지종합계획』 수립

- 돌봄
- 일자리
- 사회참여
- 인권(노인학대 포함) 및 세대통합
- 지능정보기술(AI · IoT, 정보화)
- 재난안전망

○ 『제2기(2021~2025)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가활(habilitation)*', '지원생활(supportive living)' 등 새로운 발달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발달장애 인구 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가활: 재활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물적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서 발달장애인의 일상적 생활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 '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실시('20.3~10월)

- '17년 9개 항목(건강, 일상생활, 자립생활, 사회·문화·여가활동, 주거, 복지서비스, 소득, 임신, 노후)에 장애인인권, 코로나19 재난 대응 관련 현안 등 신규문항 포함,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기초자료 확보

☐ 민선7기 핵심 복지정책의 정교화를 통한 복지체감도 증진

○ 지역사회 장애인 돌봄 체계 정비 및 자립생활 지원모형 개발

- 「장애영유아 및 아동의 사회적 돌봄 지원방안 연구」,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지원 체계 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모델 제시

○ 복지정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을 통한 시민생활안정 방안 제시

- 공공일자리 수요·공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일자리 전달체계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시 중고령자 일자리 정책 연구」
- 기초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지원 행정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정책 수립 근거 마련: 「서울시 저소득층 지원체계 연구」

☐ 코로나19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생활지원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소득계층별·가구특성별 지원효과 및 경기유발효과 분석, 재난위기가구 특성 도출

○ 감염병 대응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제한적 운영과 필수 서비스 기능 유지를 위한 대응지침 제시: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과제」

2 서비스 품질 기준을 설정하여 서비스 질을 견인하겠습니다

2020년 지역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관리 정책 강화,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서울시의 선도적 서비스의 관리 정책과 기준 마련 연구로 서비스 질 강화 견인

☐ 서울시 요양 및 서비스 공공성 강화, 좋은 돌봄 정책 지원 연구 수행

서울시 2020년 요양 및 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

- 요양보호사처우개선 종합 대책
- 좋은돌봄인증제도 확대개편(방문요양인증 확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 재가센터 확대

⇔

서울시 정책 지원 연구 수행

-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체계 및 좋은 장기요양기관 가이드라인 마련
- 좋은 돌봄 모니터링 체계 개편
- 공공요양시설 표준운영모델 연구

○ 시립요양시설 표준모델, 좋은장기요양기관 가이드, 인건비체계 연구

- 「서울시 공공 요양시설 표준운영 모델 연구」 ➡ 시립공공요양시설 서비스 혁신
- 「좋은 돌봄 장기요양기관 가이드라인 개발」 ➡ 민간 기관 운영의 공공성 견인
- 「장기요양요원 표준인건비 가이드라인(숙련급)개발」 ➡ 요양일자리 정책 개선

☐ 지역중심 돌봄 기반마련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관리 체계 마련

○ 서울시 지원주택 관리, 어르신 영양 관리, 사회적 고립 발굴의 모델 연구

- 어르신 영양 관리 사업 공공성 강화로 영양 서비스 질 개선
  - ▸「서울시 어르신 영양관리 공공성 강화 기준 마련 연구」
- 지원주택 운영방향에 맞는 지원과 중간지원조직 기능 도출
  - ▸「지원주택 운영 지원방안 연구」
- 사회적 고립 지원 모델 연구로 고독사 예방의 전국 모델화
  - ▸ '20~'2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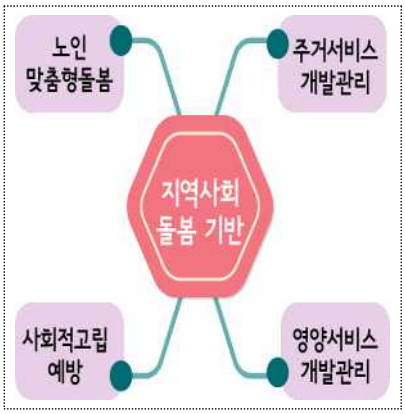

☐ 서울형 평가와 인증 운영 기준 마련 연구로 민간 복지서비스 질 견인

○ 서울형 평가의 새로운 모색과 인증 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 체계 연구

- 서울형 평가의 기준 마련을 위한 「서울형 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 「좋은 돌봄 인증시설 품질향상 모니터링 개편 연구」로 인증모니터링 고도화

2.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

1 서비스품질향상 제도적 지원

2 좋은돌봄인증제 운영

3 사회복지 인재양성

1 서울형 평가를 통해 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형 심사평가체계를 통해 시설 운영주체의 책임성과 서비스 질의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함

☐ 서울형 평가체계를 통한 사회복지 인프라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 서울시 복지정책 기조를 반영한 평가기준과 평가체계 수립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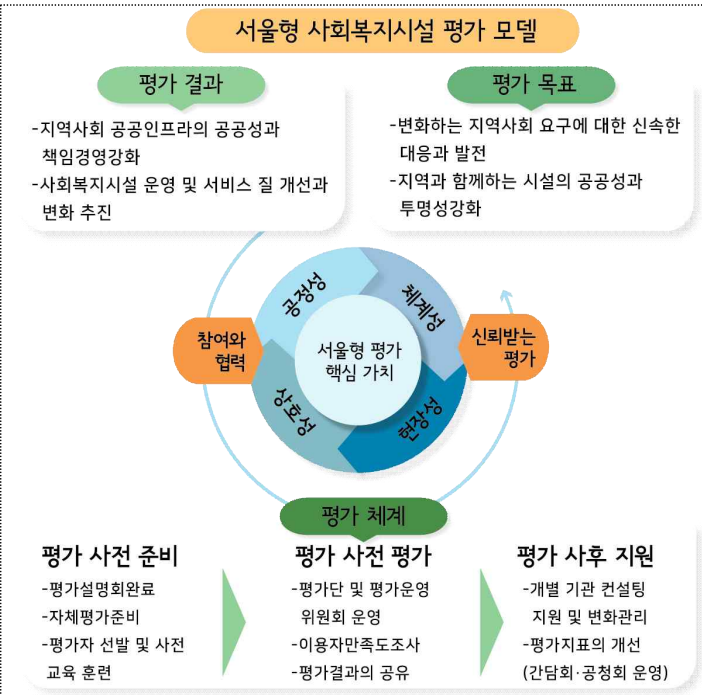

【'20~21년 평가 추진 및 준비 현황】

- '19년 서울형 평가사후 컨설팅 실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50개소 예정)
- '20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46개소)
- '20년 노숙인이용시설 평가(11개소)
- '20년 평가시설 이용자만족도 조사 (6~11월, '20년 평가대상 57개소)
- '21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 준비 (지표개발, 평가위원 양성 등)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매뉴얼 연구(2019)」결과 토대로 평가수행 준비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연구 후속과제 추진

○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전문평가위원 양성(50명) 신규

▸ 간담회(3.26) 및 자문회의(4.28) 실시, 평가 전문위원 모집(6.8.~6.22)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개발 연구」를 통한 서비스 기준 마련 신규

▸ 복지현장 간담회(6회), 전문가 자문(4회) 및 자문회의(2회) 실시

☐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신청 타당성 검토를 통한 시설환경과 서비스 질 개선

○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예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검토 확대

- 추가 사업 및 노숙인시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확대 수행

○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예산 집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신규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시설공사편」 개정 및 배포(2월~)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계약실무 공통교육 3회, 심화교육 5회 추진(6~7월)

○ 신청분야(건축·기계·전기·장비 등)별 전문적 심사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2 서울형 인증제를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서울형 인증제 추진을 통해 어르신돌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

□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대상 좋은 돌봄 인증의 안정적 추진

○ 시의성 ·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한 인증 지표 개선

-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종사자 처우개선, 윤리경영, 영양서비스 관련 지표 등 강화
- 시설별 지표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온라인 공청회 추진, 심의위원회 개최

○ 인증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증심사 및 심의기구 운영 개편

- 인증심사위원 인력풀 확대(분야별 심사위원 선발, 총95명) 및 임기제 도입(1년→3년)
- 인증심사위원 교육 체계화 : 년차별 교육 과정 마련, 교육 컨텐츠 및 시간 확대
- 인증심의위원회 분야별 구성(통합 →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시설)
- 각 위원회 위원 보강(지표개선위원회-감염병 전문가, 공단 평가자, 심의위원회-인권분야)

수시심사 및 '20년 상반기 인증심사·심의추진(총19개소)

▸ 인증 사전 지원, 심사매뉴얼 보완, 데이케어센터(14개소),노인의료복지시설(5개소)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수시 및 인증 갱신 시설 대상으로 한정 추진

○ 인증 사후품질관리체계 강화 : 노인의료복지시설 소방컨설팅 신규 도입

○ 전국 최초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 본격 추진

시범 인증	⇨	이해관계자 간담회	⇨	심사체계 정비	⇨	본 인증 추진
인증체계, 지표 실제 적용 (1월, 5개소)		심사위원, 인증기관 의견수렴 (2~5월, 4회)		지표개선, 심사매뉴얼 보완 등 (5~6월, 3회)		설명회 개최, 심사 · 심의 (6~7월, 9개소)

※하반기 인증 사전지원(교육 및 컨설팅) 및 인증심사 추진 예정(8~11월)

□ 법인 인증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및 추진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체계 구축 및 강화

- 관련 협회(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등), 법인 관계자, 인증심사위원 간담회 등
- 추진방향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인증지표 및 모니터링 관련 의견수렴 등

○ 인증 사전 ·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통합적 품질관리체계 마련

- **(사전)** 인증 준비 법인 대상 교육·컨설팅 강화로 인증 준비 지원 및 법인 역량 제고
- **(사후)** 인증 법인 대상('17년 인증법인 6개소) 사후 모니터링 추진 및 품질향상 지원

○ 법인 인증 심사의 원활한 추진 : 사전 워크숍 개최, 6개 법인 심사·심의

※ 만족도조사 결과 : 전반적 만족 4.8점/5점 (인증 통한 법인체계화도움 4.8점, 법인전문성도움 4.7점)

3 복지도시 서울을 이끄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민간 복지 인재 양성과 차세대 복지시민 성장을 지원하여 '복지도시, 서울'의 지속적 인적추진 동력 마련

☐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 대응, 당초 기획된 교육의 전반적 재설계

○ '개인별 사전학습'에 기반 한 온·오프라인 병행 설계로 교육 효과성 제고 모색

온라인 교육 (개인 사전학습)	→	오프라인 교육 (집단 심화·발전학습)
· 기본 지식, 정보, 이론에 대한 개인 사전학습		· 온라인 개인 학습을 발전, 그룹/협력학습/토론/워크숍

○ 찾동, 돌봄SOS센터 등 집합 교육 중 일부를 온라인 강의로 변경 제작 신규

▸ 신규 온라인 강좌 19과목 제작 진행 (찾동 13과목, 돌봄SOS 3과목, 인증 3과목)

☐ 정부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 집합교육 운용(5월~)

○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코디 등 (총 73회, 1,098명)

○ 소규모 집합교육, 찾아가는 교육, 소규모 학습 동아리 형태 운영

▸ 소규모 집합 20회 577명, 찾아가는 교육 20회 233명, 소규모 학습 동아리 33회 288명 완료

☐ 공유복지플랫폼 개편과 온라인 교육참여플랫폼(LMS) 본격 개발 신규

○ 공유복지플랫폼(WISH) 개편+교육센터 홈페이지+온라인 교육관리시스템(LMS) 통합 개발 ⇒ 예산 절감 · 업무 효율화 · 특성화 추진

○ 공유복지플랫폼을 통한 현장종사자 및 시민에게 복지지식, 정보공유(월평균 130건)

▸ 회원 13,000명, 최근 1년 방문자 53만명, 누적 콘텐츠 25,900건

☐ 복지직 공무원, 시민들을 위한 신규 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신규

○ 「서울시 복지직 공무원 보수교육과정 연구」 연구·자문회의(5회), FGI(6회) 완료

○ 「찾아가는 시민복지 교육 과정」 설계. 복지정책, 복지권리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

○ 「초등학생 복지교육 워크북 개발」 자문 및 교사연구회의 완료 (4회)

▸ '20년은 초등 고학년 교재(온·오프라인) 개발 예정. 인권, 정의 등 기본가치와 복지제도 연결

☐ '서울복지교육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신규

○ 총 8개 기관 참여 (관련협회, 협의회 등)

○ '20년 기관별 교육 공유 및 협력사항 논의

○ 기관장 및 실무자 간담회 운영 (5회)

○ 온라인 생중계 공동 포럼 운영(7.17)

▸ AC(After Corona)와 사회복지교육

▸ 현장 20명, 유튜브 접속 273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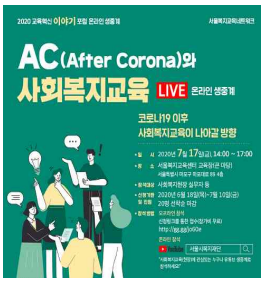

[포럼 포스터 및 화면]

3. 지역중심의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1 복지전달체계 개선

2 지역중심 공동체 지원

3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1 동 단위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찾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공공의 책무와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강화하는 찾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함

□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공공복지의 충실한 이행력 강화

○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등 주민 접촉면 확대**

- (현행) 가정방문 중심 ⇨ (개선) 가정방문 + 동 내방상담 등 주민과 접점 강화

○ **동 사례관리 활성화 및 안정화: 공통 지원+선도 자치구 집중 지원**

사례관리 공통 지원		선도 자치구 집중 지원(컨설팅) 신규
‣ 사례관리 성과 지표 개발 및 정책제안 ‣ 체계적 교육 및 수퍼바이저 등 역량 강화	✚	‣ 신청주의로 4구 기선정, 모델 개발 지원 ‣ 2022년 전 자치구에 모델 확산 목표로 추진

- 사례관리 담당의 역량에 따른 편차 극복, 안정적 사례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 선도 자치구 컨설팅단 구성 완료(6월 1주), 20년 4개구 확정(강동, 구로, 서대문, 용산)
  ⇒ 7월부터 컨설팅 진행중(소규모 모임으로 구별 순회 컨설팅 추진)

□ 동단위 복지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복지력 강화

○ **복지문제와 관련한 주민참여활동의 중복성 극복을 위한 역할 재정립**

- 각 주민활동 사업의 활동 연계 및 조정, 복지관 등 민간기관 활동과 연계 강화

○ **민간복지 역량 플랫폼으로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

- 역량강화 프로세스(동 복지대학) 운영 후 동 복지계획 수립 등 단계별 성장 지원
  ⇒ '20년 3기 선정(성동구 등 5개구) 및 운영 자료(매뉴얼, 교안 등) 구축 완료
- 주민 참여 복지 활동의 중복성·분절성 문제를 지사협의 분과로 연계하여 해결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을 위한 소통체계 정비 (구-동간 네트워킹 등 논의)

□ 지속가능한 찾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찾동 공무원의 지속적 역량 강화 지원**(교육 기획 : 지원단, 운영 : 교육센터)

-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의 탄력적 운영 기획(온라인 교육 적극 도입, 교육 시기 및 횟수 조정 등)

○ **핵심사업 동향 및 성과 확인, 피드백하는 모니터링 운영**

- 코로나 상황 대응 및 찾동 기본 기능 수행 현황 등 현안 중심 모니터링 예정(9월 중)

2 지역중심의 복지공동체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내 복지주체들의 역량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복지사업 운영 및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마련

☐ 복지공동체 사업 민-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활성화 지원

○ 실행주체별 칸막이를 넘어선 지역중심의 복지공동체 협업체계 마련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80개동→120개동), 나눔이웃 사업(300개동→324개동)
- 주민주도의 마을지향복지관 민-관 협력사업 개발 및 연계 강화

○ 복지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행 지원체계 구축

사업 지원	역량 지원	성과 지원
▸ 민간-공공 간담회 마련 ▸ 가이드라인 및 홍보지원	▸ 자치구·동·민간 교육 지원 : 실행주체별, 지역별 연합 교육	▸ 성과 연구 지원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지역사회 내 복지욕구 및 현안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

- 전국 수행기관 현장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교육(2회) 및 워크숍(2회)
- 사회적고립가구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자치구 간담회(7회), 민관 실무자 교육(16회)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및 주거지원 성과조사

- 기금지원(4회, 93명 선정), 유관기관 간담회(7회), 선정기관 실무자 교육(1회)

☐ 탈시설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강화

○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고도화를 통한 품질 향상

- 주택 입주절차 및 개별지원 등에 대한 주택운영매뉴얼 개정
- 자립생활주택 품질관리체계 재정비 및 전담인력 심층교육 지원 강화(9회)

○ 지역자립을 위한 공공과 민간 자원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 장애인복지관 협력 도전적 행동 지원 확대(17→ 22개소), 소방시민안전파수꾼 연계 등

☐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을 통한 인권옹호 및 지역통합 지원

○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Seoul Small Sparks, 옹심이) 내실화

- 운영매뉴얼 개발 및 성과측정 등 장애인 지역통합 사업으로 지역안착 지원
- 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및 권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우수사례 확산

3 공공이 주도하는 보편적 돌봄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돌봄SOS센터'의 성공적 안착과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안정적 사업 운영 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공공-민간 협업 기반 마련

◆ **돌봄SOS센터 사업 개요**

- 사업대상:'19년 시범사업(5개구) ✚ '20년(20개구) ➡ '21년(25개구; 19세 이상 전체 시민)
- 운영방법: 본사업모형→ 洞 돌봄SOS센터 설치, 돌봄매니저 2인(사회직 1명, 간호직 1명) 배치
  선행사업모형('20년 신규20개 자치구 적용)→ 區단위 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식
- 운영내용: 정보상담서비스와 돌봄계획을 통한 7대 서비스 제공(긴급·일시 욕구 신속대응)
  ※ 7대 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안부확인, 건강지원)

☐ 연구개발 기능을 통한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과 향후 방향 제시

○ 돌봄SOS센터 추진 원칙과 목적 반영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방향 제안

○ 운영 매뉴얼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한 사업 운영체계의 안정화

- 소득 기준을 배제한 서비스 **보편 제공**
- 개인 욕구 맞춤형 서비스의 **직접 제공**
- 보건과 복지 영역별 서비스 **통합 제공**
- 긴급한 요구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안정적 돌봄체계 복귀 또는 **자립 생활**

미충족 욕구(돌봄)의 해소로

찾동 기능 업그레이드

성인 돌봄 영역 보완으로

서울케어 브랜드 완성

돌봄 부담과 사각지대 Zero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 구축 지향

☐ 모니터링 기능을 통한 사업 운영 현황 파악과 사업 개선안 모색

○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운영 문제와 개선 요구의 신속 파악 즉각 대응

- 현장질의 접수 및 응대 처리, 운영실적 분석, 이용만족도 조사, 현장방문

2020년 운영현황 (5개區 88개洞: '20년 1~6월 누적실적)

접수건·실인원	찾동 협업	업무절차 소요일	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금액
접수건 **4,808건** 실인원 **3,876명**	찾동 ⇨ SOS 의뢰 37.3%	접수 ⇨ 방문 1.5일 방문 ⇨ 계획 1.5일	8대서비스 **9,184건**	**1,793백만원** 구별 약 358백만원

☐ 조정협력 기능을 통한 민관 협업 기반 마련과 서비스 품질 향상

○ 민간 제공기관 서비스유형별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공과의 협업 활성화

○ 민간 제공기관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기반의 마련

- DB구축·분석, 협약기준 마련, 모니터링, 설문조사, 네트워크, 역량강화

4.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1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2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3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

1 서울형 자산형성사업으로 자립과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창업·교육·결혼자금 등 생산적 목적의 저축에 일정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자산형성 및 자립의 토대 지원

☐ 저소득층 근로 및 저축 동기부여를 통한 탈빈곤 토대 마련

○ 3대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총 8,956명 참여** 〔'20.7월말 기준〕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장애인 이룸통장
저축중인원	5,642명	1,713명	1,601명
대 상	본인소득 220만원 이하, 부양가족 중위소득 80% 이하, 만18세이상 34세이하 근로소득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만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시민	소득인정액 100% 이하인 가구 만15세~만39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축액/기간	10·15만원/2·3년	5·7·10·12만원/3·5년	10·15·20만원/3년
저 축 목 적	교육·주거·창업·결혼자금	자녀 교육비	장애 청년의 자립지원 씨앗자금
재원부담목표	서울시 예산 및 민간후원금 10억(정액)		서울시 예산 100%
매 칭 비 율	1:1	기초생활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정액 15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룸통장 등 사업 지속 확대 추진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인원 확대('18년 2,000명→'19년 3,000명→'20년 3,000명)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룸통장 신청자격(장애등급 조정 및 가입연령) 확대

- 장애등급1~2급(일부3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연령 만15세~만34세 → 만15세~만39세

☐ '20년 신규참가자 모집(청년·꿈 7.6.~24, 이룸 5.6.~29.)

○ 희망두배 청년통장 3,000명 모집에 13,462명 접수

○ 꿈나래통장 500명 모집에 1,601명 접수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1,000명 모집에 1,481명 접수

☐ 통장사업 제도개선 및 참가자 지원프로그램 내실화

○ 청년통장 자치구별 격차해소를 위한 선발인원 배정방식 개선 및 증빙서류 간소화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선발인원배정	청년 인구수 기준	청년 인구수(50%), 최근 2년간 경쟁률(40%), 저소득층 비율(10%)
적립금지급 증빙서류	통장사업 목적에 따른 사용처 증빙	사용계획서로 지급 가능

○ 청년대상 정보제공 및 지원프로그램 전문기관 연계 등 '청년복지 네트워크' 구축

○ 참가자 개인재무 안정화를 위한 재무컨설팅 확대('19년 407명→'20년 500명)

2 시민의 법률 복지 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복지관련 법률상담·자문 및 공익소송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시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복지 증진 도모

□ '공익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법률구조 지원

○ 복지 현장(자치구, 복지기관 등)과의 상시적 협조체계 구축 통한 공익소송 수행

- 소송 및 자문 227건 수행(20년 목표 390건), 주요 판례 및 진행 사항 공유

○ 소송 지원 대상 및 분야 확대

구 분	내 용
인권 사각지대	• 형사피해자(장애인 및 노숙인 편취, 여성·아동 성범죄), 이주민(난민), 희귀질환자, 취약계층 노동자 등 대상 및 분야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	• 기존 무연고자 등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특별)한정승인, 후견(한정,특정)개시심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복지소송 확대
돌봄 종사자	•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복지현장 돌봄 종사자의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소송지원을 통해 건강한 돌봄 생태계 조성

□ 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 복지법률 상담 수행

○ 전문 상담전화 운영을 통한 종합 복지 법률 상담 실시(총 912건)

□ 공익제고를 위한 대내·외 활동 강화

○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 여부 확인 및 언론 홍보

- 20. 4월 총선 기준 약 1만 5천명 대상자의 선거권 보장에 기여

○ 취약계층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5~7월, 총 3건)

연번	협약일	대상	주요내용
1	'20.05.27.	금천경찰서	민생 치안 활동 중 발굴 된 취약계층 법률 지원
2	'20.06.24.	서울시위탁가정지원센터	위탁가정아동에 대한 상속채무 법률지원 체계 구축
3	'20.07.29.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 어르신 돌봄기관·종사자를 위한 법률 지원

○ 복지 이슈에 발굴에 따른 자체 토론회 개최

- 정신장애인 관련 언론보도 기준 마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20.06.19.)

○ 서울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업무 추진 준비

- 관련 소송 7건 수임·진행 중 / 사업 수행 필요인력 충원 협의 중(변호사 등 3명)

□ 시민(공무원,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법률 자문·교육, 권리집 발간

○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권리집) 발간 예정

- 이주민의 권리 관련 권리집 신규 발간
- 기존 발간 된 권리집(총8편)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하여 전집 발간

3 취약계층의 금융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제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민의 가계부채 비상구' 역할 수행 강화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가계부채 규모관리 지원 강화

○ 공적채무조정 지원(취약계층 관재인 선임비 무상지원) 및 채무자대리인제 운영

⇨ 6,903명(파산 6,625/회생 278) 악성부채 1조 7,419억원 법률적 면책 지원

○ 가계부채 규모관리 상담 질 향상을 위한 시민만족도 조사 신규

- 금융복지상담센터 서비스를 제공 받은 서울시민 약 400명 대상(9~12월 진행)

○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단'(9월 시행) 신규

- 빚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 영세상인 등이 개인회생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과 체계 구축

☐ 가계부채 확대예방 콘텐츠 다양화

○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심화 프로그램 개발 · 교육(9~11월)

○ 긴급 금융복지상담 상담시간 연장운영(코로나 위험단계 하향시 추진)

○ 금융복지상담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센터 홍보 강화

- "코로나에 대처하는 서울금융시민되기" 영상(스미싱, 불법추심 예방) 제작 및 SNS 홍보(4월)
- 市 복지정책실 및 자치구와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금융취약계층 지원 홍보(5월)

5.12.(금) 〈"서울복지포털" 영상게재〉

5.28.(목) 〈아주경제 전면광고〉

자치구 개별 동주민센터 미니배너 설치
(5~7월 중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 복지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강화

○ 지역 센터별 '서울금융복지투게더' 간담회(6~11월, 2회) 신규

- (대상) 금융 · 법률 · 의료 · 주거 · 고용 · 복지 등 지역별 금융복지서비스 협력기관
- (내용) 금융복지상담서비스의 기관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 강화

부서별 주요업무(서면)

1. 정책연구실

1.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 2020년 서울시 어르신복지종합계획 수립 연구
3. 서울시 노인돌봄체계 기초 연구
4.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과 과제
5. 서울시 세대통합 실태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6. 마을지향복지관 성과평가 연구
7. 찾동 2.0 복지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8. 찾동 공공사례관리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
9. 복지분야 시민참여예산 사업분석 연구
10. 서울시 저소득층 지원체계 연구
1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연구
12.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13. 제2기('21~'25)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14. 서울시 중고령자 일자리 정책 연구
15.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16. 장애영유아 및 아동의 사회적 돌봄 지원방안 연구
17.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
18.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방안 연구
19. 서울시 '좋은돌봄' 장기요양기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0. 서울시 공공 요양시설 표준 운영 모델 연구
21.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표준 인건비 가이드 개발 연구
22. 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23. 서울시 어르신 영양관리 공공성 강화 기준 마련 연구
24.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및 인권 증진 방안 연구
25. 좋은 돌봄 인증시설 품질 향상 모니터링 개편 연구
26. 좋은돌봄 인증기관 지원 개선방안 연구
27.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28.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과제

1-1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 추진목적

○ 서울 노인의 다각적인 생활 실태와 욕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5조 (조사 및 용역) (※ 2년 주기 조사)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 사업내용 : 주요 영역별(건강, 근로, 여가, 돌봄 등) 실태조사, 정책적 함의 제시

○ 사업절차

설문문항 검토 ('20. 2~4월)	⇨	자문위원회 운영 ('20. 3~10월)	⇨	노인실태조사 실시 ('20. 4~8월)	⇨	분석 및 보고서 작성 ('20. 8~11월)

○ 사 업 비 : 158백만원(집행액 : 140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서울시 담당부서 업무협의 : '20. 2월

- 일정 및 세부내용 협의 및 사업 추진 관련 협력 방안 논의

○ 기존 문항 검토 및 노인학대 관련 연구 문헌 분석·정리 : '20. 2~4월

○ 실태조사 용역 업체 선정(공고, 심사, 계약) : '20. 3~5월

○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1~2차) : '20. 3~5월

- 설문조사 문항의 적절성 검토, 노인학대 문항 등 개발

○ 서울시 관련 부서 설문문항 의견수렴 : '20. 6월

○ 설문문항 적절성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 '20. 7월

☐ 향후계획

○ 서울시 노인 생활실태 설문조사 실시 : '20. 8~9월

○ 조사결과 분석 : '20. 9~10월

○ 3차 자문위원회 운영(결과검토 및 시사점 도출) : '20. 10월

○ 인포그래픽 제작 및 연구보고서 발간 : '20. 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353-0400) 연구1팀장:서종녀(☎411) 담당:이순성(☎412)

1-2 2020년 서울시 어르신복지종합계획 수립 연구

☐ 추진목적

○ 초고령사회 대응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 제시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

○ 사업대상 : 서울시 노인, 학계 및 현장전문가, 노인 유관단체 등

○ 사업내용 : 서울시 조례에 의한 어르신복지 종합계획(비전 및 목표, 세부사업 등) 수립

- 서울시, 자치구, 복지기관 사업현황(기초연금, 돌봄, 일자리, 치매, 주거, 접근권 등), 전문가 의견조사
-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도출, 서울시 해당부서 담당자 간담회, 종합계획 수립

○ 사업절차

어르신복지정책 검토 및 실행결과 진단 ('20. 3~5월)	⇨	욕구조사·분석 및 중점과제 도출 ('20. 5~10월)	⇨	서울시 해당부서 담당자 간담회 ('20. 9~10월)	⇨	종합계획 수립 ('20. 11월)

○ 사 업 비 : 33백만원(집행액 : 15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서울시 등 주체별 노인복지정책 현황 검토 : '20. 2~6월

-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 사업유형 및 보조금 현황 검토
-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노인사업 및 예산 분석(돌봄, 생활지원, 일자리 등)

○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20. 5~7월

- 학계 및 현장전문가, 시민대상(서울시 어르신모니터링단) 1·2기 계획 평가(35명)
- 유지 및 확대 사업(일자리, 독거가구 지원 등), 향후 신규사업 제안(코로나19 등 긴급재난 대응, IoT 등)

○ 중점과제(안) 도출을 위한 현장전문가 워크숍 : '20. 7월

-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노인복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서울지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추천자(22명)
- 돌봄, 일자리, 사회참여, 인권 및 세대통합, 지능정보기술(AI·IoT·정보화), 재난안전망 등 중점과제(안) 도출

☐ 향후계획

○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안) 도출 : '20. 8~9월

○ 서울시 해당부서 간담회(세부사업의 적정성, 예산 등 검토) : '20. 9~10월

○ 어르신복지종합계획 수립 : '20. 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353-0400) 연구1팀장:서종녀(☎411) 담당:현명이(☎414)

1-3 서울시 노인돌봄체계 기초 연구

☐ 추진목적

○ 급속히 증가하는 어르신의 복지수요 대응을 위하여 국내외 노인돌봄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서울시 어르신정책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 사업내용 : 돌봄정책 현황 분석, 해외 사례 연구, 정책 개선안 도출

- 정부 노인돌봄정책(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현황 분석
- 서울시 어르신 돌봄 관련 정책 현황 및 쟁점 분석
- 서울시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례분석
- 서울시 어르신 돌봄서비스 관련 수요·공급 현황 분석
- 국내외 정책 비교 및 서울시 어르신돌봄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안

○ 사업절차

사전 자문 ('20. 4월) ⇨ 노인돌봄정책검토 및 사례분석 ('20. 5~10월) ⇨ 노인 돌봄체계 쟁점 및 개선방안 도출 ('20. 9~10월) ⇨ 보고서 작성·발간 ('20. 11월)

○ 사 업 비 : 8백만원(집행액 : 1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정부 노인돌봄 정책 및 국외 정책 현황 분석 : '20. 2~6월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본 지역포괄케어 등 정책 현황 분석

○ 노인돌봄 관련 현장 전문가 인터뷰 : '20. 7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재가지원서비스센터 등 관리자 5명
- 시설유형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 향후계획

○ 자문위원회·공동연구원 구성 및 운영 : '20. 8~11월

○ 노인돌봄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 : '20. 9~10월

○ 노인 돌봄체계 쟁점 및 개선방안 도출 : '20. 9~10월

○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20. 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353-0400) 연구1팀장:서종녀(☎411) 담당:이순성(☎412)

1-4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과 과제

☐ 추진목적

○ '20. 1월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제정에 따른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지원계획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서울시 학대피해노인('17년~'19년)

○ 사업내용 : 지역사회 기반 노인학대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

-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분석
- 국내 정책 및 해외 사례검토
- 서울시 노인학대 정책과제 도출

○ 사업절차

국내 정책 및 해외사례 검토 ('20. 7~9월) ⇨ 서울시 노인학대 연차별 추이 및 현황분석 ('20. 7~9월) ⇨ 노인학대 사례검토 및 정책과제(안) 도출 ('20. 9~10월) ⇨ 보고서 발간 ('20. 11월)

○ 사 업 비 : 비예산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서울시 노인학대 정책 현황 검토 : '20. 7월

- 2012년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노인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 이후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어르신학대 예방사업 세부사업 시행

○ '19년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결과보고서 자료 분석 : '20. 7월

- 노인학대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81.5%)이고 연령은 70대와 80대가 84.8%
- 노인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남성(78.3%)이고 연령은 70대 이상이 35.9%, 40대가 24.7%, 50대가 23.4% 순
- 학대행위자 5명 중 4명이 피해자의 가족(아들이 37.2%, 배우자가 35.4%, 딸이 11.8%)

☐ 향후계획

○ 전문가 의견수렴 : '20. 8~10월

○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분석(3개년), 사례검토 : '20. 8~10월

○ 정책과제(안) 도출, 보고서 발간 : '20. 10~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353-0400) 연구1팀장:서종녀(☎411) 담당:서종녀(☎411)

1-5 서울시 세대통합 실태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 추진목적

○ 서울시 세대 간 갈등현황을 분석하여 세대통합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서울시민(만 19세 이상)

○ 사업내용

- 세대 간 갈등 사례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 세대 간 갈등 해결방안과 세대통합을 위한 요인 분석
- 서울시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 사업절차

사전 자문 및 선행연구 분석 ('20. 1~5월)	⇨	세대 간 갈등 및 해결 사례 조사 ('20. 6~9월)	⇨	세대통합 요인분석 및 의견수렴 ('20. 8~10월)	⇨	정책 대응방안 모색 및 보고서 발간 ('20. 10~11월)

○ 사 업 비 : 13백만원(집행액 : 10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학계전문가(3인) 사전자문 : '20. 1 ~ 2월

- 건강한 사회에서 갈등이 표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공공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것은 공공의 책무임

○ 연구방침 수립 및 선행연구 분석 : '20. 2 ~ 3월

○ 델파이 조사 및 갈등사례 수집 분석 완료 : '20. 4 ~ 7월

- 갈등발생 영역(가족, 정치, 경제 및 복지, 사회문화) 확인
- 청년vs노년, 청년vs장년의 갈등이 부각되고, 청년vs장년의 갈등은 경제(일자리)를 중심으로 나타남
- 청년vs노년은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년vs노년의 갈등은 '증여/상속'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계획

○ 세대통합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20. 8~10월

○ 정책적 대응방안 제안 및 보고서 발간 : '20. 10~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253-0400) 연구1팀장:서종녀(☎411) 담당:이수영(☎413)

1-6 마을지향복지관 성과평가 연구

☐ 추진목적

○ 마을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역중심 활동지속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마을지향 변화지원사업 실행기관, 협력단, 참여주민 등

○ 사업내용 : 마을지향 변화지원사업 성과 및 중간지원조직 역할방안 마련

- 마을지향 변화지원사업 추진현황 검토(신규기관(1년차), 실행기관(2~4년차), 선행기관(5년이상))
- 마을지향 변화지원사업 유형화, 조사 및 결과분석(사업실행기관, 협력단, 참여주민 대상)
- 마을지향 변화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공유회 및 보고서 발간

○ 사업절차

마을지향사업 검토 ('20. 3~5월)	⇨	실태조사 및 분석 ('20. 6~10월)	⇨	연구결과 공유회 ('20. 10월)	⇨	보고서발간 ('20. 11월)

○ 사 업 비 : 34백만원(집행액 : 32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마을지향 변화지원사업 연차별 사업결과보고서 분석 : '20. 4월~6월

- 연도별(2013~2019) 사업개요, 사업예산, 주민참여(주민참여구성, 주민참여수, 주민참여방법), 기관네트워크, 사업평가(복지관 내부변화, 주민변화, 사업변화 등) 등 분석

○ 마을지향 변화지원사업 연차별 인식조사 분석 : '20. 5월~7월

- 연차별(2014~2019년) 참여기관 종사자, 참여주민의 관계인식 변화, 자기효능감 변화 등 분석

○ 마을지향 변화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 '20. 6월~7월

- 마을지향 변화지원사업 실행기관 및 선행기관 종사자, 참여주민 대상 실태조사 실시
- 실행기관 및 선행기관 종사자 95명, 참여주민 166명 완료(7.31일 기준)

☐ 향후계획

○ 마을지향변화지원사업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 FGI : '20. 8~9월

○ 마을지향복지관 운영 실태조사 및 FGI 결과분석 : '20. 9~10월

○ 연구결과 공유회 및 보고서 발간 : '20.10~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353-0400) 연구1팀장:서종녀(☎411) 담당:현명이(☎414)

1-7 찾동 2.0 복지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 추진목적

○ 찾동 2.0 복지사업의 효과성 검토를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서울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찾동 2.0 복지사업 및 관련 공무원·민간 참여자 등

○ 사업내용

- 민선 6기 찾동 성과 분석 및 민선 7기 찾동 2.0 현황분석
- 찾동 2.0 복지사업 주요 내용 및 운영 현황 파악
- 찾동 2.0 복지사업 성과 분석 및 복지사업 간 연계현황 분석
- 찾동 2.0 복지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모색

○ 사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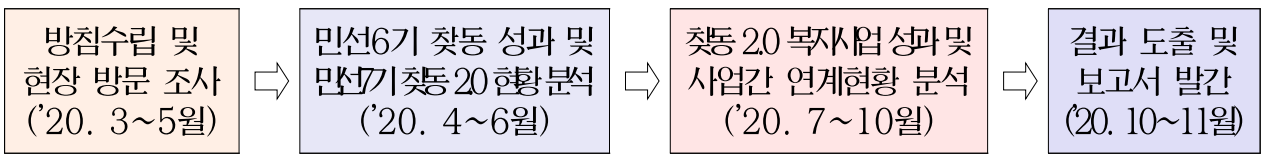

○ 사 업 비 : 46백만원(집행액: 30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서울시 업무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0. 1 ~ 2월

- 학계전문가 4명, 현장전문가(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8명

○ 현장방문 및 연구방침 수립 : '20. 2 ~ 3월

- 동주민센터(홍제1동, 독산3동, 창2동) 및 구청(서대문구) 방문

○ 찾동 서비스연계 현황 확인 및 현장의견 수렴 : '20. 4 ~ 5월

○ 행복e음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클리닝 : '20. 6 ~ 7월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15~'19) 176,722개 사례 수집

☐ 향후계획

○ 데이터 분석 및 현장전문가 FGI : '20. 8~9월

○ 찾동 2.0 효과성 제고방안 도출 및 보고서 발간 : '20.10~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253-0400) 연구1팀장:서종녀(☎411) 담당:이수영(☎413)

1-8 찾동 공공사례관리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

☐ 추진목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사례관리 모니터링 지표개발을 통해 사례관리 업무의 양적, 질적 성장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사업

○ 사업내용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사례관리 모니터링 지표개발

- 찾동 사례관리 업무 추진현황 분석
- 사례관리 관련 지표 현황 및 쟁점 분석
- 찾동 공공사례관리 모니터링 지표(안) 개발

○ 사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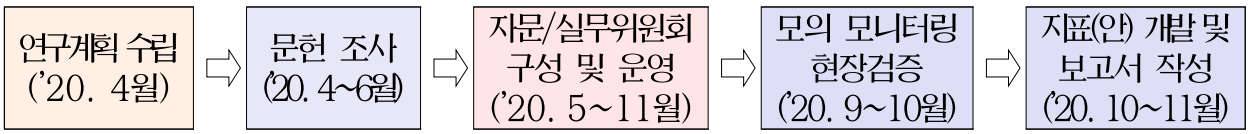

○ 사 업 비 : 4백만원(집행액 : 1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사전협의 및 연구계획 수립 : '20. 3~4월

- 연구계획 및 내용 협의를 위해 관련 부서 및 현장과의 사전 간담회 실시(5회)

○ 현황자료 및 문헌분석 : '20. 4~5월

- 사례관리 관련 논문, 매뉴얼, 지침, 지표 등 검토

○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실시 : '20. 4~5월

- 연구내용 및 방법, 사례관리 모니터링 지표사례 등 자문

○ 지표개발 실무위원회 구성 및 회의 실시 : '20. 6~7월

- 찾동 모니터링 지표 개발방향 및 구성에 대한 논의

☐ 향후계획

○ 사례관리 모니터링 지표(안) 개발 : '20. 8~ 9월

○ 현장 적용성 검증(모의 모니터링 실시) : '20. 9~10월

○ 지표 최종안 도출 및 보고서 작성 : '20. 10~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353-0400) 연구1팀장:서종녀(☎411) 담당:성기원(☎416)

1-9 복지분야 시민참여예산 사업분석 연구

☐ 추진목적

○ 복지 분야 시민참여예산 사업 분석을 통해 시민 욕구를 파악하여 시 정책 반영사업을 도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연구 제안(서울시 복지정책과-8259호,2020.04.01.)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서울시 복지정책실 시민참여예산 사업('15~'20년)

○ 사업내용 : 복지분야 시민참여예산 사업분석 및 시 정책사업 발굴

- 관련 문헌 및 자료 검토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내용 분석(연도별 사업유형 및 내용, 예산 등)
- 복지 분야 시민참여예산사업 시정책 반영사항 도출(반복적으로 제안되는 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 등)

○ 사업절차

연구계획 수립 ('20. 3월)	⇨	문헌 및 자료분석 ('20. 4~5월)	⇨	시민참여예산 사업내용 분석 ('20. 5~6월)	⇨	시 정책사업 도출 및 보고서 발간 ('20. 7~8월)

○ 사 업 비 : 1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사전협의 및 연구계획 수립 : '20. 2~3월

• 서울시 사전협의('20.2.11): 연구목적과 범위 협의(최근 6년간 복지정책실 시민참여예산 사업 분석을 통해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속사업 발굴)

○ 문헌 및 자료 검토(관련 논문, 시민참여예산 운영현황 등) : '20. 4~5월

○ 시민참여예산 사업검토(시민참여예산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등) : '20. 5~6월

○ 시민참여예산 사업 현장실무자 인터뷰 : '20. 7월

- 사업내용 및 진행과정, 애로사항,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 등(6개 사업)

☐ 향후계획

○ 시정책 반영사항(계속사업) 도출, 보고서 작성 : '20. 8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353-0400) 연구1팀장:서종녀(☎411) 담당:성기원(☎416)

1-10 서울시 저소득층 지원체계 연구

☐ 추진목적

○ 서울형 및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서울시 자치구 및 기초보장 담당 공무원, 일반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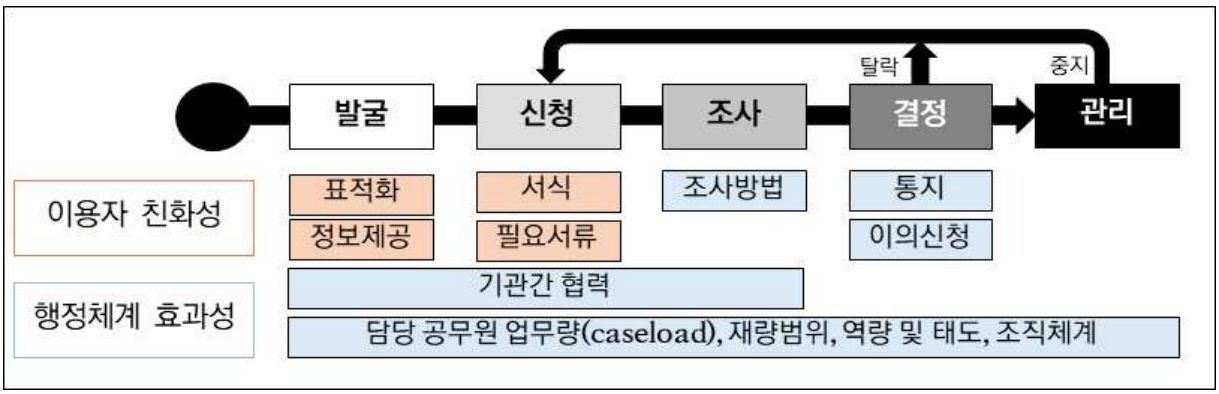

○ 사업내용 : 기초보장 운영체계에 대한 총괄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

- 운영체계 효과성 평가 : 문헌검토 및 자료분석, 담당 공무원 FGI 및 설문조사 실시
- 신청절차 이용자 친화성 평가: 제공정보, 신청서식, 필요서류 등에 대한 시민평가

○ 사업절차

연구계획 수립 ('20. 2월) ⇨ 기초보장 운영체계 효과성 평가 ('20. 4~8월) ⇨ 기초보장 이용자 친화성 평가 ('20. 8~9월) ⇨ 개선방안 도출 및 보고서 발간 ('20. 9~11월)

○ 사 업 비 : 41백만원 (집행액 : 38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학계 및 현장전문가 자문위원회(총 5명) 구성 : '20. 3월

○ 자치구 공무원 인터뷰 및 FGI(총 7회) : '20. 4~7월

☐ 향후계획

○ 자치구 기초보장제도 공무원 설문조사 : '20. 8월

○ 기초보장제도 신청절차 시민평가 설문조사 : '20. 8~9월

○ 자문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 '20. 9~10월

○ 정책 개선방안 도출 및 보고서 작성 : '20. 9~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353-0400) 연구2팀장:문혜진(☎421) 담당:문혜진(☎421)

1-1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연구

☐ 추진목적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파악함으로서 향후 사업추진 달성도 제고 및 변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공무원,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등

○ 사업내용 : 서울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1차년 이행 점검

- 58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19년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 수행
- 서울복지거버넌스 10개 분과 위원을 모니터링단으로 구성·운영, 결과 분석
-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21년 실행계획 수정 및 보완 방안 수립

○ 사업절차

서울시 업무협의 및 연구계획 수립 ('20. 1~2월) ⇨ 자체평가결과 검토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20. 3~6월) ⇨ 서울복지거버넌스 모니터링단 운영 ('20. 7~9월) ⇨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보고서 발간 ('20. 9~11월)

○ 사 업 비 : 49백만원(집행액 : 17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서울시 업무협의 및 자문위원회 구성 : '20. 1~3월

○ 1차 자문위원회 운영 : '20. 4월

○ 서울시 58개 세부사업 자체평가서 취합 및 검토 : '20. 5월

○ 모니터링 단 교육 진행 및 1차 모니터링 실시 : '20. 6~7월

- 모니터링단원 28명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총 58개 세부사업 모니터링 실시

☐ 향후계획

○ 58개 세부사업 2차 모니터링 실시 : '20. 8~9월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 9월

○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최종보고서 발간 : '20. 9~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353-0400) 연구2팀장:문혜진(☎421) 담당:윤희숙(☎422)

1-12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 추진목적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창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서울시 임차보증금지원사업(희망온돌기금) 및 사업참여자

○ 사업내용 : 사업운영현황 분석 및 조사수행 및 발전방안 마련

-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 대상 긴급지원 사업현황 분석
- 사업의 성과평가 및 향후 사업운영 전반의 개선 방안 수립

○ 사업절차

사전의견수렴 및 연구계획 수립 ('20. 1~2월)	⇨ 이론검토 및 성과평가 연구체계 수립 ('20. 3~5월)	⇨ 지원대상자 및 이해관계자 조사 분석 ('20. 5~8월)	⇨ 향후 개선방안 제안 및 보고서 발간 ('20. 9~11월)

○ 사 업 비 : 41백만원(집행액 : 25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료 분석 : '20.1~4월

○ 1차 자문위원회 운영 : '20. 4월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용역 계약 : '20. 4월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완료 : '20.5~7월

- 지원기관 실무자 대상 및 심층인터뷰와 FGI 진행 및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 지원당사자 대상 심층인터뷰와 전화 설문조사 실시

☐ 향후계획

○ 조사결과의 분석 및 정책적 함의 도출 : '20. 8~9월

○ 2차 자문위원회 운영 : '20. 10월

○ 향후 개선방안 제안 및 최종보고서 발간 : '20. 9~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353-0400) 연구2팀장:문혜진(☎421) 담당:윤희숙(☎422)

1-13 제2기('21~'25)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추진목적

○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특성과 욕구,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 및 가족(부모), 서울시, 유관기관 등

○ 사업내용 :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서울시 발달장애인 현황 및 정책 환경 점검
- 제1기(2016~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성과평가
- 제2기(2021~2025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 제2기 기본계획의 방향성, 중점과제, 세부과제 등 제시

○ 사업절차

계획수립 ('20. 1~2월)	⇨	정책 환경 분석 및 제1기 계획 평가 ('20. 3~6월)	⇨	제2기 계획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20. 6~9월)	⇨	제2기 계획(안) 마련 및 보고서 발간 ('20. 10~12월)

○ 사 업 비 : 64백만원(집행액 : 47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서울시 발달장애인 현황 및 정책 환경 분석 : '20. 4~5월

- 발달장애인 인구통계, 발달장애인 정책동향 등 관련 문헌 검토

○ 제1기 성과평가 및 제2기 기본계획 의견수렴 1차 조사 실시 : '20. 6~7월

- 2017년~2020년 제1기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적자료 등 평가자료 마련
- 학계 및 연구기관, 부모회 및 단체, 현장전문가 평가패널(30명) 구성 및 평가 진행

☐ 향후계획

○ 2차 델파이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 '20. 8~9월

○ 제2기 기본계획 초안 마련 : '20. 9~10월

○ 정책간담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20. 11~12월

○ 연구보고서 발간 : '20. 12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 류명석(☎6353-0400) 연구2팀장: 문혜진(☎421) 담당: 김현승(☎425)

1-14 서울시 중고령자 일자리 정책 연구 (지역사회 일자리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추진목적

○ 자치구별 중고령자 대상 일자리 지원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효과적·효율적 전달체계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

○ 사업대상 : 서울시 50세 이상 일자리 정책, 관련 기관 및 관계자 등

○ 사업내용 : 서울시 중고령자 일자리 지원정책 검토, 전달체계 재정립

- 서울시 50세 이상 시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 검토 및 욕구 파악
- 중고령자 일자리 지원정책 자치구별 전달체계 검토 및 재정립 방안 모색

○ 사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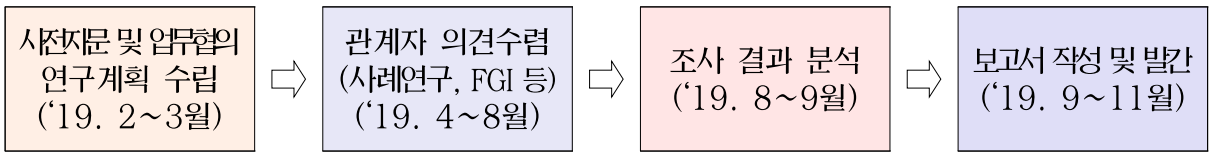

○ 사 업 비 : 37백만원(집행액 : 34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관련 자료 검토, 연구계획 수립 : '20. 2~3월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관계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 '20. 3~6월

○ 자문진 구성 및 1차 자문회의 실시 : '20. 3~5월

○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FGI, 참여주민 인터뷰 실시 : '20. 7월

- 은평구(종사자 FGI 2회, 주민 인터뷰 3회), 성동구(종사자 FGI 1회)

☐ 향후계획

○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FGI, 참여주민 인터뷰(4개구) : '20. 8~ 9월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조사 결과 분석, 간담회 실시 : '20. 9~10월

○ 3차 자문회의 실시, 서울시 등 관계자 의견 수렴 : '20. 9~10월

○ 연구보고서 작성 및 홍보·발간 : '20. 9~ 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 류명석(☎6353-0400) 연구2팀장: 문혜진(☎421) 담당: 김미현(☎424)

1-15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 추진목적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2023~2027)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계획의 수립)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서울시 만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 사업내용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파악 통한 향후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표 개발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자문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개발 및 본 조사 실시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 분석 통한 향후 개선방안 도출

○ 사업절차

사전자문 및 연구계획 수립 ('20. 1~2월)	⇨	선행연구 검토 및 실태조사표 개발 ('20. 3~4월)	⇨	실태조사표 모의조사, 본 조사 실시 ('20. 5~8월)	⇨	결과분석 및 최종보고서 작성 ('20. 9~11월)

○ 사 업 비 : 144백만원(집행액 : 125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실태조사 관련 사전자문(3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2회) 추진 : '20. 1~7월

○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표 개발, 당사자 인터뷰 및 예비조사 : '20. 2~5월

○ 실태조사 실시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조사안내 포스터 발송 : '20. 6~7월

○ 실태조사표 최종본 확정 및 조사응답 시스템 구축, 본조사 실시 : '20. 6~7월

☐ 향후계획

○ 실태조사 본 조사 진행(비대면 조사 실시) : '20. 8~ 9월

○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 '20. 9~10월

○ 최종보고서 작성 및 발간 : '20. 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 류명석(☎6353-0400) 연구2팀장: 문혜진(☎421) 담당: 이송희(☎426)

1-16 장애영유아 및 아동의 사회적 돌봄 지원방안 연구

☐ 추진목적

○ 서울시 장애아동의 사회적 돌봄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서울시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방안 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서울시 장애아동(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재가 장애아동 중심)

○ 사업내용 : 서울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지원 실태 파악을 통한 향후 지원방안 및 개선과제 도출

- 장애아동과 사회적 돌봄 개념, 장애아동 돌봄 지원체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서울시 장애아동 관련 2차 통계 자료 분석, 돌봄 지원 서비스 현황 파악
- 서울시 장애아동의 사회적 돌봄 지원 과제 도출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서울시 장애아동의 사회적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 사업절차

사전자문 및 연구계획 수립 ('20. 1~2월)	⇨	선행연구 검토 및 돌봄체계 현황 진단 ('20. 3~6월)	⇨	사회적 돌봄 지원방안 마련 위한 조사 실시 ('20. 7~9월)	⇨	의견수렴 및 최종보고서 작성 ('20. 10~11월)

○ 사 업 비 : 46백만원(집행액 : 29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 관련 현장·학계 전문가 자문 추진(3회) : '20. 7월

○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 관련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공동연구진 회의 : '20. 2~5월

○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 검토 : '20. 6~7월

○ 장애아동 돌봄 관련 2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검토 : '20. 7월

☐ 향후계획

○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 '20. 8~10월

○ 전문가 델파이 조사표 개발 및 조사 실시, FGI 실시 : '20. 8~10월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FGI 조사 결과 분석 : '20. 9~10월

○ 최종보고서 발간 : '20.10~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 류명석(☎6353-0400) 연구2팀장: 문혜진(☎421) 담당: 이송희(☎426)

1-17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

☐ 추진목적

○ 장애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형 고령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중)고령장애인과 가족

○ 사업내용 :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의 조기노화와 개입 시점을 감안 만 4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 고령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서비스 제공자 대상 의견수렴 조사
- 돌봄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의 특성 및 유형, 지원욕구 등 도출을 위한 현장연구
-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정책과제 도출 및 지원체계 모형 개발

○ 사업절차

연구계획수립 ('20. 1~2월)	⇨	국내외 사례 검토 ('20. 3~6월)	⇨	포커스 그룹 인터뷰 & 현장 사례연구 ('20. 5~8월)	⇨	모형 도출 및 보고서 발간 ('20. 10~11월)

○ 사 업 비 : 13백만원(집행액 : 10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사전의견수렴 및 연구계획수립 : '20. 1~2월

- 현장실무자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연구의 방향성 및 내용 협의

○ 문헌검토 및 국외 선진 사례조사 : '20. 3~5월

- 고령장애인 개념 및 기준, 현황, 관련 정책 검토
- ADRC(미국) 등 고령장애인 전환서비스 국외 정책사례 조사 및 정리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 : '20. 6~7월

- 강동구와 노원구 유관기관 실무자 및 공무원(13명) 대상 고령 발달장애인 및 장노(張老)가구 인식 수준, 현안문제 등 관련 인터뷰 진행 완료

☐ 향후 계획

○ 현장 사례연구 : '20. 8~10월

○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20.11~12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 류명석(☎6353-0400) 연구2팀장: 문혜진(☎421) 담당: 김현승(☎425)

1-18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방안 연구

☐ 추진목적

○ 서울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방안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

○ 사업대상 :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30개소 및 관계자 등

○ 사업내용 :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 및 현안, 개선 방안 검토

- 자활사업 관련 현황 검토(전국, 서울시, 자치구 등)
- 유형별 관계자 의견 수렴(자문진 회의, 간담회, FGI, 인터뷰 등)
- 지방분권 취지에 따른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정책 추진방향 제시

○ 사업절차

사전자문 및 업무협의 연구계획 수립 (‘19. 2~3월)	⇨	관계자 의견수렴 (설문, FGI, 인터뷰 등) (‘19. 4~8월)	⇨	조사 결과 분석 (‘19. 8~9월)	⇨	보고서 작성 및 발간 (‘19. 9~11월)

○ 사 업 비 : 48백만원(집행액 : 30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연구계획 수립(사전자문 및 업무협의, 관련 자료 검토 등) : ’20. 2~3월

○ 지역자활센터장 1차 간담회 실시 : ’20. 4월

○ 5개 센터 종사자 FGI(20명), 관계자 간담회(19명) 실시 : ’20. 5월

○ 자문진 구성 및 1,2차 자문회의 실시 : ’20. 3~6월

○ 참여주민 인터뷰 실시(15명) : ’20. 3~6월

☐ 향후계획

○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분석 : ’20. 8~9월

○ 지역자활센터장 등 관계자 2, 3차 간담회 실시 : ’20. 8~9월

○ 3차 자문회의 실시, 서울시 등 관계자 의견 수렴 : ’20. 9~10월

○ 연구보고서 작성 및 홍보·발간 : ’20. 9~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 류명석(☎6353-0400) 연구2팀장: 문혜진(☎421) 담당: 김미현(☎424)

1-19 서울시 '좋은돌봄' 장기요양기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추진목적

○ 장기요양기관의 '좋은돌봄'을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9, 2019.7.26.)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종사자 및 이용자**

○ **사업내용 :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의 '좋은기관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좋은기관경영'을 위한 국내·외 문헌분석
- '좋은기관경영' 현장 사례조사(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 '좋은돌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수정·보완: 정의, 실행내용, 현장사례 등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견조사(FGI) 수행
- 영역별(리더십, 인사관리, 서비스 질 관리 등) '좋은돌봄' 실천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절차**

사전자문 및 연구방침 수립 ('20. 1~3월)	⇨	'좋은기관경영' 사례조사 ('20. 4~8월)	⇨	좋은돌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수정보완 ('20. 4~10월)	⇨	'좋은돌봄' 가이드라인제시 ('20. 11월)

○ **사 업 비 : 24백만원(집행액 : 16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좋은기관경영 사례조사 완료**(시설·재가 장기요양기관 9개소)

- 장기요양기관의 리더십, 인사관리, 서비스 질 관리 등 실천사례 조사 완료

○ **가이드라인 작성 틀 구성**

- '좋은기관경영의 구성요소 별 개념 정의, 주요내용, 체크리스트, 자원리스트 등 목차 구성

☐ 향후계획

○ **'좋은기관경영' 가이드라인 작성** : '20. 8~10월

○ **종사자 FGI(포커스그룹인터뷰) 시행** : '20. 9~10월

○ **가이드라인 보완 및 최종보고서 발간** : '20. 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 류명석(☎6353-0400) 연구3팀장: 송인주(☎431) 담당: 안기덕(☎433)

1-20 서울시 공공 요양시설 표준 운영 모델 연구

☐ 추진목적

○ 서울시 공공 요양시설의 표준운영 모델을 도출하여 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2호

○ 사업대상 : 신규 건립 서울시립 요양시설 및 시립 요양시설

○ 사업내용 : 요양서비스의 질을 선도하는 공공 요양 서비스 모델 구성

- 이용자의 잔존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아닌 일상적 시공간 구성 지향
- 서울시립 공공요양시설의 표준 서비스 모델과 관리모델 및 공간계획 제안
- 신규시설의 다양한 서비스 모형 결합(재가, 주야간, 단기보호) 계획 제안
- 서울시립 신규 설립 요양 시설 운영계획 반영

○ 사 업 비 : 40백만원(집행액 : 19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공간 및 서비스 방향 제안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완료

- 이용자중심돌봄, 일본 유니트케어 관리, 영국 케어홈 케어관리기준 등 검토

○ 기존 시립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서비스 현황과 세부 문제 도출

- 요양시설종사자(24명) 업무시간, 이용자(5명)생활시간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완료

○ 공간-노인기능향상- 공간계획 결합 운영모델 검토(건축,유니트케어 공동연구진)

☐ 향후계획

○ 시설운영 표준모델 구성(서비스과정, 준유니트케어 공간표준, 인력) : '20. 9월

- S_PUP(Seoul Public Nursing Home Service Model through the Place, Users, Providers)(안)제안
  ① 요양시설 생활 노인의 일상 공간을 개편하고 공간을 통한 돌봄 서비스, ② 이용자 기능 향상 돌봄 서비스, ③ 의료적 직무가 아닌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기능과 인력 배치 재정립의 3가지 측면을 적용한 돌봄 서비스 모델 구성 제안

○ 2021년 서울시립 요양시설 운영계획 반영, 연구보고서발간 : '20.10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 류명석(☎6353-0400) 연구3팀장: 송인주(☎431) 담당: 송인주(☎431)

1-21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표준 인건비 가이드 개발 연구

☐ 추진목적

○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근로 계약에 따라 급여를 정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이 타당한 기준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 받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9, 2019.7.26.)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 **사업내용 : 서울시 근무 장기요양요원의 표준 인건비 가이드 제시**

- 임금체계 개편 관련 국내·외 문헌분석
- 서울시 (재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임금체계 사례조사
- 사회복지시설 등 유사업종 임금체계 사례비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견조사(FGI) 수행
-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의 임금결정 및 구성체계 등 제시

○ **사업절차**

사전자문 및 연구방침 수립 ('20. 1~3월)	⇨	장기요양요원 임금 체계 사례조사 ('20. 4~9월)	⇨	FGI 수행 ('20. 9~10월)	⇨	표준인건비 가이드제시 ('20. 11월)

○ **사 업 비 : 34백만원(집행액 : 32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장기요양요원 임금체계 사례조사 진행**(시설·재가 장기요양기관 11개소)

- 임금수준, 승진·승급체계, 직무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례조사 완료

○ **국외 장기요양요원 임금체계 조사 진행**

- 독일, 영국 사례 외 일본, 호주 사례 추가 조사 완료

☐ 향후계획

○ 임금체계 사례조사 및 분석 : '20. 8~10월

○ FGI(포커스그룹인터뷰) 시행 : '20. 10월

○ 최종보고서 발간 : '20. 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 류명석(☎6353-0400) 연구3팀장: 송인주(☎431) 담당: 안기덕(☎433)

1-22 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 추진목적

○ 지원사회기반 돌봄(커뮤니티 케어) 구현의 서울시 선도사업인 지원주택 운영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운영 지원 방향, 체계, 사업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과-7247('20.4.2)장애인지원주택운영지원방안 연구 추진 요청

○ 사업대상 : 서울시 지원주택 위탁 운영 주체 및 임직원 관 이용자

○ 사업내용 : 서울시 지원주택사업의 선도성과 공공성 강화 관리체계 제안

- 지원주택의 관점과 가치를 반영하는 운영지원 방향과 지원 영역 도출
- 지원주택 운영 관리기준, 운영 지원 사업(교육, 컨설팅)개발
- 지원주택 중간 지원 기관의 역할과 필요 업무 내용 도출

○ 사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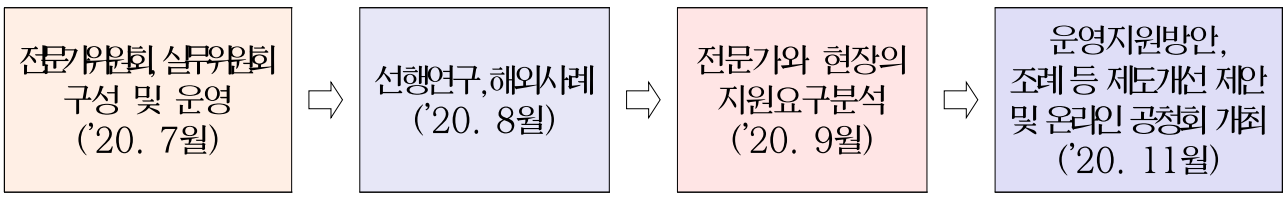

○ 사 업 비 : 31백만원(집행액: 12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연구범위(중간지원의 일반적 기능과 발달장애인 지원 영역 기능)와 내용결정

- 전문가위원회, 실행위원회 구성 및 각 1차 회의 개최

○ 지원주택운영지원관련 연구 및 해외사례(영국, 미국) 분석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영역 실무위원회(2회)로 현안과 지원대안 도출 :'20. 8월

○ 지원주택 지원 기능 일반적 영역(대상자 사정, 모니터링, 성과분석 등) 추가 조사 :'20. 9월

○ 지원주택 운영 지원 방안 도출, 전문가위원회 2~4차 회의 :'20.10월

○ 지원주택 운영 지원 사업(조례 등 제도개선과제) 및 관리체계 제안 온라인 공청회 :'20.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 류명석(☎6353-0400) 연구3팀장: 송인주(☎431) 담당: 송인주(☎431)

1-23 서울시 어르신 영양관리 공공성 강화 기준 마련 연구

☐ 추진목적

○ 어르신 영양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시설 이용자

○ 사업내용 : 장기요양기관 영양관리 및 급식제공 기준 마련

-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급식 제공 실태 진단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관련시설 관계자 의견 수렴
- 장기요양시설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인력, 도구, 시설, 물리적 공간 등) 도출
- 서울시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영양/급식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좋은 돌봄 인증 지표에 적용

○ 사업절차

계획수립 ('20. 2월)	⇨	현황조사 ('20. 5~9월)	⇨	인증지표 개발 ('20. 7~10월)	⇨	급식 제공 기준 마련 ('20. 11월)

○ 사 업 비 : 55백만원(집행액 : 48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연구방향 검증을 위한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실태조사 업체 선정 및 조사 실시

-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대상 급식관리 실태조사 실시

☐ 향후계획

○ 장기요양시설 영양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 '20. 8~10월

○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20. 9~10월

○ 장기요양시설 영양관리 기준 제시 : '20. 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 류명석(☎6353-0400) 연구3팀장: 송인주(☎431) 담당: 김정현(☎432)

1-24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및 인권 증진 방안 연구

☐ 추진목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운영 가이드라인 및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서울시 복지정책과 소관)

○ 사업내용 : 운영현황 및 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인터뷰 추진, 가이드라인 및 방안 수립, 자문위원회 운영, 공청회 개최, 현장간담회 추진 등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관련 운영현황, 인권실태,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파악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가이드라인 및 인권 증진 방안 마련 : 시설운영 방향성 정립,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기준 마련, 실천사례 제시 등

※사회복지시설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는 다년 연구과제로 '20년에는 시설 및 환경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 등의 영역을 중점적으로 추진

○ 사업절차

연구설계 (‘20. 2~3월)	⇨	현황 및 사례조사 (‘20. 3~7월)	⇨	설문조사 및 FGI (‘20. 5~9월)	⇨	가이드라인 및 인권 증진방안 수립 (‘20. 9~10월)

○ 사 업 비 : 90백만원(집행액 : 69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사회복지시설 대상 복지현장·학계·연구계 의견수렴 및 현황·사례조사

- 복지현장간담회 추진(6회), 전문가 자문 실시(4회), 자문회의 개최(2회) 등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현황분석,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분석,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조사대상 리스트 구축(1,546개), 종사자/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착수 등

☐ 향후계획

○ 설문조사 및 FGI 추진 : '20. ~9월

○ 연구보고서 발간(인권증진 방안 연구) : '20. 11월

○ 연구보고서 발간(시설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 '20. 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 류명석(☎6353-0400) 연구3팀장: 송인주(☎431) 담당: 오문준(☎434)

1-25 좋은 돌봄 인증시설 품질 향상 모니터링 개편 연구

☐ 추진목적

○ 좋은 돌봄 인증제의 공공성 강화 및 제공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좋은 돌봄 인증제도 대상 시설
(주간보호, 노인의료복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 사업내용 : 좋은 돌봄 인증을 통한 돌봄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마련

- 우수기관 서비스 제공 사례 반영 및 적용
-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방안 모색
- 좋은 돌봄 인증기관 대상 모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 돌봄 서비스 품질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 개편 방안 도출

○ 사업절차

계획수립 ('20. 2월)	⇨	기존 지표 점검 ('20. 5~8월)	⇨	모의 컨설팅 진행 ('20. 9~10월)	⇨	모니터링 개편안 마련 ('20. 11월)

○ 사 업 비 : 39백만원(집행액: 20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연구 설계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좋은돌봄 인증기관 모니터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업체 선정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섭외, 델파이 조사 문항 설계

☐ 향후계획

○ 좋은돌봄 인증시설 모니터링 개편을 위한 의견 조사 실시 : '20. 8월

○ 모니터링 내용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 '20. 8～9월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9～10월

○ 모의 컨설팅 진행 및 서울시 업무협의 : '20. 9～10월

○ 좋은 돌봄 인증시설 모니터링 개편안 제시 : '20. 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 류명석(☎6353-0400) 연구3팀장: 송인주(☎431) 담당: 김정현(☎432)

1-26 좋은돌봄 인증기관 지원 개선방안 연구

☐ 추진목적

○ 서울형 좋은돌봄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기관의 인증지원금 지원 방향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인증과 지원의 목표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1호
2020년 연구기획 제안(서울시 어르신복지과-6162, 2020.3.27)

○ 사업대상 : 좋은돌봄 인증기관(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3개소

○ 사업내용 : 좋은돌봄 인증제 목적에 충실한 인증지원금 지원 방향 및 내용 재설계

- 좋은돌봄 인증지원금 목표 정립
- 좋은돌봄 인증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기준 및 집행 세부 기준 제안
- 서울시의 인증지원금 지원 관리방안 마련

○ 사업절차

문헌자료 및 지원금 관리제도 분석 등 ('20.4~5월) ⇨ 인증지원금 사용설문조사 현장관계자 의견수렴 ('20.5~7월) ⇨ 인증지원금 지원안 마련, 자문회의 등 ('20.8~9월) ⇨ 공청회, 인증지원금 지원안 확정 ('20.10월)

○ 사 업 비 : 비예산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인증지원금 사용 현황과 문제 분석을 위한 조사 실시

- 조사기간: 4.29(수)~5.22(금), 대상: 243개소 인증기관 설문조사완료

○ 분석결과와 지원방향에 대한 현장관계자 의견 수렴(FGI) 실시(2회)

☐ 향후계획

○ 인증기관 지원 방안 마련 및 자문회의 : '20. 8~ 9월

○ 인증기관 지원 방안 온라인 공청회 : '20. 10월

○ 연구보고서 발간 : '20. 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353-0400) 연구3팀장:송인주(☎0431) 담당:이경란(☎0435)

1-27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 추진목적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결과를 조사·분석하여 지원제도가 서울시민의 생활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서울시민

○ 사업내용 : 재난긴급생활비 생계지원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및 이용 데이터, 서울시 보유 빅데이터 연계분석
- 시민(신청자) 설문조사 : 간략설문(약 3만 명) 및 상세설문(1만 명) 실시
- 코로나19 및 재난긴급생활비의 사회경제적 영향, 지출특성 등 조사·분석
- 소득계층·가구특성별 효과 및 향후 정책적 활용을 위한 재난위기가구 분포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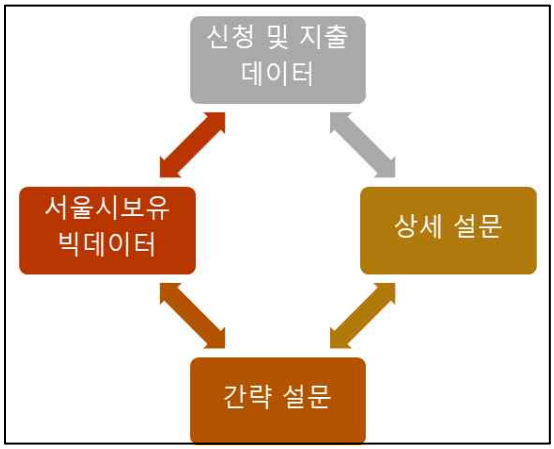

○ 사업절차

연구계획 수립 ('20. 7월) ⇨ 신청데이터 예비분석 ('20. 7월) ⇨ 시민설문조사 실시 ('20. 8~10월) ⇨ 자료분석 및 결과 도출 ('20. 10~12월)

○ 사 업 비 : 160백만원 (집행액 : 134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학계 전문가 5인 공동연구진 구성 : '20. 7월

○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데이터 예비분석 : '20. 7월

☐ 향후계획

○ 시민(신청자) 설문조사 : '20. 8~10월

○ 서울시 보유 빅데이터 연계 데이터 구축 : '20. 9월

○ 생활지원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20. 7~9월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최종 보고서 작성 : '20. 10~11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353-0400) 연구2팀장:문혜진(☎421) 담당:문혜진(☎421)

1-28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과제

☐ 추진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응 사회복지시설 위기관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사업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시비 지원 시설)**(※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

○ **사업내용 : 감염병 대응 사회복지시설 기능 정상화를 위한 쟁점과 지원방안 검토**

- 코로나19 대응 중앙 및 서울시 지침 검토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근로현황, 안전관리 등) 현황 조사
-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역할 및 과제 도출

○ **사업절차**

문헌 및 사례검토 ('20. 7~9월) ⇨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조사 ('20. 9~10월) ⇨ 조사결과분석 및 간담회 실시 ('20. 11~12월) ⇨ 보고서 발간 ('20. 12월)

○ **사 업 비 : 62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조사 필요성 논의 : '20.6~7월**

- 대규모 감염병의 주기적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위기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필요
- 현행 보건 중심의 대응지침 이외 지역사회 필수 서비스 기능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역할과 제도 개선사항 검토 필요

○ **코로나19 관련 기존 문헌 및 지침 검토 : '20. 7월**

-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수칙 안내·배포를 통해 감염병 예방 노력 진행
-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감염예방·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지침 배포, 종사자복무, 대체인력운영, 필수 서비스 제공 운영지침 배포

☐ 향후계획

○ **문헌 검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조사 : '20. 8~10월**

○ **조사결과분석, 간담회, 보고서발간 : '20. 11~12월**

작성자	정책연구실장:류명석(☎6353-0400) 연구1팀장:서종녀(☎411) 담당:서종녀(☎411)

2. 서비스품질관리본부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2.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전문위원 양성
3. 좋은돌봄인증제 운영
4.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5.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6.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
7.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 추진목적

○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2항(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사업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 서울형 평가(장애인복지관 46개소, 노숙인이용시설 11개소)
- 평가지표 개선(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평가사후 컨설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자발적 참여시설)

○ 사업내용 : 평가운영위원회 및 평가단 운영, 지표개발, 현장평가 및 컨설팅 등

○ 사업절차

평가지표 개선 공청회 및 설명회 ⇨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 평가운영위원회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 평가결과공유회 사후 컨설팅

○ 사업비 : 169백만원(집행액 : 81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서울형 장애인복지관 현장평가 추진(46개소) : '20. 7월

- 현장평가위원(3인1조)이 현장을 방문하여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평가 실시

○ 서울형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준비(11개소) : '20.6~7월

-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설명회 및 평가운영위원회 개최

○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추진(30개소) : '20.6~7월

- 컨설팅 제공 업체 선발,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 및 현장 컨설팅 진행

○ '21년 서울형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준비 : '20.1~5월

- 평가지표개선위원회 운영(사회복지관 6회, 노인복지관 5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회)
- 평가지표 협의를 위한 3종 시설협회장 간담회 개최
- 평가지표 온라인 공청회 실시 및 평가설명회 개최(5회)

☐ 향후계획

○ '20년 현장 평가수행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0. 8~11월

○ 평가결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20. 9~12월

○ 컨설팅 수행 및 결과공유회 : '20. 8~11월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김은영(☎6353-0350) 평가팀장:유준용(☎351)

2-2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전문위원 양성

☐ 추진목적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역량강화 과정을 통해 평가 전문위원으로 양성, 활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20년 서울형 평가전문위원 신규 선발 위원

○ 사업내용 : 전문위원 모집 및 선발, 교육과정운영, 시범평가, 사업평가 등

- 위원양성 체계화 (선선발 후교육/ 전문교육과정), 재단위원 시범참여(노숙인시설)
- 양성분야 : '21년 평가 3개 유형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
- 교육과정 : 4개 과정 최소 40시간

구분	주요내용	학습방법	
기초 I	서울형평가, 유형별 운영기준 및 지침검토 등	12H	유형별 소규모 그룹 교육
기초 II	세부 평가지표 내용 숙지	6 H	유형별 소규모 그룹 교육/ 선행평가위원 Q&A
심화 I	의견조율을 통한 편차조정, 핵심질문 도출	15H	유형별 소규모 그룹 액션러닝
심화 II	평가매뉴얼에 의한 실전 연습	7 H	실전 모의평가

○ 사업절차

신규모집/선발 ('20. 6~7월) ⇨ 기초 및 심화교육 ('20. 9~11월) ⇨ 교육과정 수료 ('20. 11월) ⇨ 사업평가 ('20. 11월)

○ 사 업 비 : 32백만원(집행액 : 4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20년 서울형 평가전문위원 기본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 '20.5월

○ '20년 서울형 평가전문위원 서류심사 및 선발 완료 : '20.7월

- 총 69명 (사회복지관 26, 노인종합복지관 2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3)

○ 교육실무기획위원회 구성 및 1~2차 회의 : '20.6~7월

☐ 향후계획

○ 교육실무 기획회의 3~5차 운영 : '20. 8~11월

○ 평가전문위원 교육과정 운영 : '20. 9~11월

○ 서울형 평가전문위원 양성사업 최종평가 : '20. 11월

작성자 |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김은영(☎6353-0350) 평가팀장:유준용(☎351) 담당:장지현(☎353)

2-3 좋은돌봄인증제 운영

☐ 추진목적

○ 서울시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을 통해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돌봄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2항(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사업대상 :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
○ 사업내용 : 인증 전문기구 구성 및 운영, 인증 심사위원 육성, 인증시설 사전·사후지원(소규모 교육, 모니터링 등), 현장심사 및 인증심의 등
○ 사 업 비 : 243백만원(집행액 : 60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시범인증 실시 및 의견수렴 : '20. 1~4월
- 인증심사(5개소), 인증시설 및 심사위원 간담회(4회)

○ 좋은돌봄 인증전문기구 구성·운영 및 인증심사위원 선발·양성 : '20. 4~5월
- 시설유형별 인증심의위원회 구성(3종, 각 8명, 인권분야 강화) 및 운영(5회)
- 인증지표개선위원회 구성(4종), 지표개선 회의(12회), 온라인 공청회(3회) 개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종사자 처우개선, 영양서비스 관련 지표 등 강화
- 시설유형별 인증심사위원 모집·위촉(95명) 및 교육 진행(4회)

○ 인증사전 지원 및 인증 사후품질관리 : '20. 6~7월
- 인증 지표교육(4회), 인증매뉴얼 개정 FGI 개최 및 개정위원회 운영(2회)
- 모니터링단원 선발(일반 20명,소방분야 5명), 교육·발대식 개최, 지표 개선

○ 좋은돌봄 시설 상반기 인증현장심사 및 심의 : '20. 2~7월
- 데이케어센터(14개소) 및 노인의료복지시설(5개소) 인증심사 및 심의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반기 갱신시설 및 수시심의 신청시설만 인증심의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9개소) 인증심사 및 심의

☐ 향후계획

○ 하반기 인증심사 추진 및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 '20. 8~10월
○ 인증시설 모니터링, 이용자만족도조사 실시 : '20. 8~11월
○ 인증사전 및 사후관리(컨설팅, 교육) 지원 : '20. 9~11월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김은영(☎6353-0350) 인증팀장:김연선(☎361) 담당:김정원(☎362)

2-4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 추진목적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인 법인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인증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2항(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 계획(서울시복지정책과-19236호, '17.7.19.)

○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등

○ 사업내용 : 인증전문기구 구성 및 운영, 인증심사위원 육성, 인증사전 지원(소규모 교육, 및 컨설팅 등), 현장심사, 인증법인 모니터링 등

○ 사업절차

지표확정 및 신청접수 ('20. 4~5월)	⇨	심사 및 결과보고 ('20. 6~7월)	⇨	사전컨설팅 ('20. 8~11월)	⇨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진행 ('20. 8~10월)

○ 사 업 비 : 19백만원(집행액 : 9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서울시 업무협의, 이해관계자(법인, 인증심사위원)간담회 개최 : '20. 1~4월

- 사업추진방향 및 일정 등 논의, 법인 인증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
- 2020년 인증지표 검토방향 및 인증법인 모니터링 관련 의견 수렴 등

○ 지표 검토위원회 구성 및 지표검토,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20. 4월

- 학계, 현장전문가, 시· 재단관계자 6인,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 등 반영
- 2020년도 인증사업 추진 논의 및 인증지표 확정 등

○ 법인인증 심사위원 양성계획 수립 및 교육추진 : '20. 5월

- 인증심사위원 양성계획 수립 및 필수 교육 진행(14명)

○ 인증신청법인 사전교육 및 현장심사 추진(6개소) : '20. 6~7월

- 법인 대상 지표 교육, 인증심사위원 사전·사후회의 개최, 심사 추진

○ 2차 운영위원회 개최 : 현장심사 결과 심의 : '20. 7월

☐ 향후계획

○ 인증 법인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진행 : '20. 8~10월

○ 소규모 그룹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20. 8~11월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김은영(☎6353-0350) 인증팀장:김연선(☎361) 담당:한이슬(☎366)

2-5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 추진목적

○ 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2항(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 사업내용 : 기능보강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 신청사업의 시급성, 사업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검토
- 복지시설의 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전문장비 등에 대한 전문가 현장실사
- 예산 절감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내용 조정

○ 사업절차

사업설명회 개최 ('20. 2월) ⇨ 시설유형별 현장실사 (상시) ⇨ 내부검토회의 및 종합검토회의(상시) ⇨ 사업비 예산 확정 (서울시, '20.12월)

○ 사 업 비 : 222백만원 (집행액 :102백만원)

☐ 추진실적 ('20. 7월말 기준)

○ 사업설명회 개최(118명 참석)

-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방향, 지원기준, 신청방법, 업무절차 등 교육진행

○ 타당성 검토 수행 (611건, 335개소, 21,025백만원)

- 분야별 전문가(건축, 설비, 전기 등) 현장확인을 통한 실태 점검
- '20년 노숙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8건(6개소, 1,116백만원)
- '20년 추가 노인국고보조시설 44건(32개소, 965백만원)
- '21년, '20년 노숙인복지시설 101건(48개소, 2,228백만원)
- '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긴급(공기청정기) 84건(84개소, 608백만원)
- '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긴급1차 및 일반 69건(49개소, 2,363백만원)
- '21년 종합사회복지관 191건(82개소, 7,382백만원)
- '21년, '20년 추가(2차) 노인종합복지관 114건(34개소, 6,363백만원)

☐ 향후계획

○ '21년 장애인복지시설, 노인국고보조 타당성 검토 수행 : '20. 8 ~ 11월

○ 전산시스템 관리운용 및 기술검토 매뉴얼 개정 : '20. 12월

작성자 |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김은영(☎6353-0350) 기능보강사업팀장:서영교(☎381) 담당:이건혁(☎382)

2-6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

☐ 추진목적

○ 복지시설 인프라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능보강사업의 효율성과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3호(복지분야의 교육 및 자문), 9호(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 서울시 2019년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5호. '19.7.30.)

○ 사업대상 : 기능보강사업 집행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

○ 사업내용 :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 매뉴얼 보급·전문교육·상담

- 기능보강사업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기능보강사업 계약 실무 교육 운영
- 계약 준비·계약 관리 분야 상담 및 자문위원회 운영

○ 사업일정

계약 분야 상담 (상시)	+	업무매뉴얼 개정 및 신규 매뉴얼 개발 및 배포 ('20. 1~12월)	+	계약 실무 교육 ('20. 6~9월)

○ 사 업 비 : 60백만원 (집행액 : 36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기능보강사업 업무 매뉴얼(시설공사편) 개정 및 배포 : '20. 1~2월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설명회 배포(150권) 및 온라인 배포

○ 기능보강사업 계약실무 교육(공통교육 3회, 심화교육 5회) : '20. 6~7월

- 기능보강사업 업무 매뉴얼(시설공사편) 배포(320권)

○ 계약 준비 및 계약 관리 분야 상담 : '20. 1~7월

-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 대상 지방계약법 상담(141건)

○ 기능보강사업 계약실무 상담 자문회의 운영 : '20. 4~7월

- 계약실무 상담 자문회의 개최(1회) 및 수시 서면자문 실시

☐ 향후계획

○ 기능보강사업 계약 실무 교육(심화교육 2회) : '20. 9 월

○ 계약 준비 및 계약 관리 분야 상담 : '20. 8~12월

○ 신규 업무 매뉴얼(물품계약·설계용역) 개발 : '20. 8~12월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김은영(☎6353-0350) 기능보강사업팀장:서영교(☎381) 담당:이가영(☎383)

2-7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추진목적

○ 지역 특성 및 시민 욕구에 기반 한 사회서비스를 기획·발굴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과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사업대상 : 사회서비스 이용 시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자치구

○ 사업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 기반조성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 교육 등 역량강화
- 지역사회서비스 사업홍보 및 사업 재구조화 지원 등

○ 사업절차

민간위탁 협약 (시↔재단/3년 단위)	⇨	사업설명회 ('20. 1월)	⇨	교육, 현장점검, 사업개발, 만족도조사 ('20. 2~11월)	⇨	성과공유회 ('20. 12월)

○ 사 업 비 : 364백만원(집행액 : 165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자치구 역량강화 지원 : '20. 1~7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안내서 제작·보급
-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 직무 교육(총7회, 308명)
- 자치구 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총4회, 85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향상 및 활성화 : '20. 2~7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리플릿(2종) 제작·배포
- 제공기관 운영(서비스 제공절차) 및 기관등록 안내 동영상 제작
- 신규 제공기관 집합 컨설팅(18개소, 25명)

☐ 향후계획

○ 제공기관 및 자치구 공무원 교육·간담회 : '20. 8~12월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 '20. 8~12월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 성과공유회 : '20. 8~12월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김은영(☎6353-0350) 지역사회서비스팀장:김영수(☎371)

3. 지역복지통합본부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2.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
3. 우리동네 나눔이웃
4. 2020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희망온돌 광역기금)
5.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6. 장애인 지역통합 사업
7.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8.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운영
9. 서울시 돌봄SOS센터 운영 지원

3-1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 추진목적

○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과 지원체계를 통해 지역특성별 사회적 고립가구 대응 모델을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4호. 2018.04.06.)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120개 동주민센터 및 민간 복지기관

○ 사업내용 : 사회적 고립 가구 대응체계 모델화 마련 및 사업 운영 지원

- 추진주체 역량강화(자치구, 동주민센터, 민간 복지기관)
- 사업 운영 지원(통합 콘텐츠 개발, 현장모니터링 지원)
- 사회적 고립가구 특성별 모델연구 및 참여기관 과정 분석

○ 사업절차

사업설명회 및 현장조사 ('20. 2월)	⇨	사업추진 지원 ('20. 2~11월)	⇨	모델연구 및 과정분석 ('20. 3~11월)	⇨	결과발표회 ('20. 11월)

○ 사 업 비 : 221백만원(집행액 : 90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수행기관(12개소) 현장조사 및 역량강화 지원

- 전국 수행기관 12개소 선정 및 1,2,3차 조정계획서 수립 및 검토
- 현장조사(2월/12회), 현장모니터링(6월/12회)
- 워크숍 : 1차(2월/자료집제작 및 발송으로 대체), 2차(6월/44명)
- 전담인력 및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2회/37명)

○ 사회적고립가구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설명회 및 기관 선정

- 간담회 : 사전 전체 설명회(25개 자치구, 2월), 찾아가는 설명회(5개 자치구, 3월), 자치구 실무자 간담회(6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사업안내 등)
- 복지기관 실무자 교육(4회/88명), 동주민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영상 제작 및 배포, 민·관 통합 실무자 워크숍(11회/211명), 신규 담당자 교육(1회/28명)

☐ 향후계획

○ 사업추진 주체별 역량강화(교육) : '20. 8~11월

○ 사업운영 지원(모니터링 및 간담회 등) : '20. 8~11월

○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20. 8~11월

○ 홍보 컨텐츠 제작배포, 성과공유회 및 사업평가 : '20. 8~11월

작성자	지역복지통합본부장:유연희(☎6353-0300) 지역공동체팀장:백명희(☎301) 담당:감수미(☎307)김선미(☎305)

3-2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

☐ 추진목적

○ 복지기관이 지역사회 중심의 관점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주민주도 복지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108호, '13.04.25)

○ 사업대상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장애인복지관 50개소

○ 사업내용 : 복지관의 마을지향 관점 내재화 및 주민중심 복지사업 개발 지원

- 공모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심사 및 선정, 모니터링, 결과보고)
- 마을지향복지관 주체별 역량강화(교육, 자문 지원) 및 네트워크 촉진
- 마을지향복지관 간담회,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평가, 성과연구 공유회 개최 등

○ 사업절차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20. 2~3월) ⇨ 사업추진 및 역량강화 ('20. 3~11월) ⇨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20. 8~11월) ⇨ 성과공유 및 평가 ('20. 11~12월)

○ 사 업 비 : 111백만원(집행액 : 56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마을지향 지속성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지원

- 선정심사(1회), 15개소 선정 및 약정체결, 사업비 교부, 협력단 구성(11명) 및 지원

○ 마을지향복지관 주체별 역량강화 지원

- 간담회(1회), 교육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5명, 1회), 교육(3회)

○ 지역공동체 신규 프로그램 개발

- 계획수립, 현장방문 의견수렴(6회), 자문회의(2회), 기획회의(2회)
- 협력기관 3개소 선정 및 기관별 계획수립, 전체 전략회의(1회)

☐ 향후계획

○ 마을지향복지관 주체별 역량강화 지원 : '20. 8~11월

○ 지역공동체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지원 : '20. 8~12월

○ 중간공유서 제출 및 현장 모니터링 : '20. 8 ~ 9 월

○ 성과공유회 및 사업평가 : '20. 11~12월

작성자	지역복지통합본부장:유연희(☎6353-0300) 지역공동체팀장:백명희(☎301) 담당:최문경(☎304)

3-3 우리동네 나눔이웃

☐ 추진목적

○ 주민 주도의 소모임 활동으로 복지의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 관계망을 형성하고, 복지당사자 등 주민성장을 촉진하여 복지공동체를 도모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자치행정과 제1824호,2019.03.08.)

○ 사업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324개 동주민센터, 나눔이웃 주민

○ 사업내용 : 나눔이웃 안착 및 활성화 지원

- 자치구 주도 수행능력 강화 지원(자치구간담회, 방문교육 지원 및 강사풀제공)
- 실천 현장 우수사례 홍보영상 및 사례집 제작·배포
- 실행동(신규·기존)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참여 핵심 주민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 사업절차

실행동 선정 및 예산배부 ('20. 3월)	⇨	역량강화 지원 ('20. 3~9월)	⇨	현장 모니터링 ('20. 3~10월)	⇨	성과공유회 ('20. 11월)

○ 사 업 비 : 57백만원(집행액 : 21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자치구 주도의 사업 추진기반 구축

- 자치구 사업 설명회, 자치구 담당자 회의 및 상시 소통 등
- 자치구별 교육 및 간담회 지원 (3개구/종로·서초·송파)
- 신규 실행동 상반기 모니터링 실시(6개구/9개동)

○ 나눔이웃 사업 콘텐츠 강화 : 우수동아리(4개) 영상 제작

○ 참여주민 역량 강화 : 나눔이웃 주민리더 역량강화 교육(5회,23명)

○ 나눔이웃 활동 현황(6월기준) : 324개동 541개 동아리 운영 중

☐ 향후계획

○ 신규실행동 모니터링 및 자치구별 현장방문 교육 지원 : '20. 8~11월

○ 실천현장 우수사례 사례집 제작 : '20. 8~11월

○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실시 : '20. 8~11월

○ 지속화 방안 마련 워크숍 진행 : '20. 11월

작성자	지역복지통합본부장:유연희(☎6353-0300) 지역공동체팀장:백명희(☎301) 담당:양길영(☎306)

3-4 2020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희망온돌 광역기금)

☐ 추진목적

○ 서울시 주거위기 취약계층에게 임차보증금 지원함으로써 선정가구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서울시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체계를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 알림(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5447, 2019.4.4.)

○ 사업대상 : 서울시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 지원

○ 사업절차

발굴·추천	⇨	신청접수	⇨	배분위원회	⇨	지원금 지원	⇨	결과(정산)보고	⇨	모니터링
자치구, 복지기관, 주거복지센터 등		자치구 소득기준 지역자원연계 가능성 검토		신청접수완료 후 복지재단 사례심사 및 배분		자치구의 지급요청 후 임대인에게 계좌송금(대납)		지원금 지원 후 사례관리기관 결과보고 작성		선정가구 방문 모니터링 실시 총 지원가구 10% 이내

○ 사 업 비 : 760백만원(집행액 : 266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사업추진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사업홍보

-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7회), 서울형 임차보증금 사업 자문회의(1회),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설명회(영상) 및 자료배포(1,000부)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추진

- 배분심의위원회의(4회), 총 93명 선정(383,614천원)
- 지원사업 선정기관 담당자 교육(1회, 21명)

○ 서울형 임차보증금 성과연구 지원

☐ 향후계획

○ 서울형 임차보증금 신청 및 배분(3회) : '20. 8~12월

○ 선정기관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 '20. 8~11월

○ 최종 평가 : '21. 1월

작성자	지역복지통합본부장:유연희(☎6353-0300) 지역공동체팀장:백명희(☎301) 담당:정선진(☎303)

3-5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 추진목적

○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주택을 통해 전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참여 및 통합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제15조),
서울시 제 2차 탈시설화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0274)

○ 사업대상 : 장애인거주시설(43개소) 및 자립생활주택(71개소) 이용 장애인

○ 사업내용 : 자립생활주택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 자립 지원체계 강화

- 자립생활주택 입·퇴거 지원 및 거주시설 종사자·이용자 자립역량 강화
-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 및 품질관리(전담인력 역량강화, 모니터링, 심사 등)
- 지역사회 자립 관련 전문기관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안전·주거·금융, 고용 등)

○ 사업절차

주택이용연계 (수시) ⇨ 주택입주자 자립생활지원(연중) ⇨ 주택운영지원 주택품질관리(연중) ⇨ 입주자만족도조사 세부사업별평가(9~11월)

○ 사 업 비 : 123백만원(집행액 : 30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신규 선정 및 재협약 심사 추진

-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 4회(21개소), 재협약 심사 1회(19개소)

○ 자립생활주택 운영 품질 관리

- 품질관리체계 개선안 및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지표 개선안 수립
- 주택운영 매뉴얼 개정 집필진 구성 및 현장실무자 FGI 2회, 집필회의 2회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및 운영사업자(코디네이터 등) 지원

- 입·퇴거자원회의(25명), 솔루션 회의(10회), 권역별 코디네이터 실무·대표회의(4회),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교육(1회), 찾온자(장애인복지관 협력사업 간담회(3회), 운영사업자 간담회(1회)

○ 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 역량강화

- 신규 코디네이터 기초교육(1회), 코디네이터 기본교육(3회) 및 심화교육(2회)

☐ 향후계획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심사(현장실사, 심사 등) : '20. 8~11월

○ 자립생활주택 운영모니터링, 이용자만족도조사 : '20. 8~10월

○ 자립지원 서비스 자원개발 및 연계 : '20. 8~12월

○ 사업성과 공유회(비대면) 및 외부평가 : '20. 8~11월

작성자	지역복지통합본부장:유연희(☎6353-0300) 장애인복지팀장:김혜정(☎321)

3-6 장애인 지역통합 사업

☐ 추진목적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옹호시민 육성 및 주민주도형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4항**(복지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업대상 : 서울시민(장애인, 비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서울스몰스파크) **및 시민옹호활동가육성**(옹심이)

- **서울스몰스파크** : 지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다양한 주민 소모임과 활동 지원
- **옹심이** : 지역 내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시민옹호인 모집·육성, 재가장애인과 옹호인 매칭 및 활동지원

○ **사업절차**

협력기관 선정 ('20.2~3월)	⇨	협력기관 지원 ('20.3~11월)	⇨	사업 추진 ('20.4~12월)	⇨	사업 공유 및 평가 ('20.10~12월)

○ **사 업 비 : 380백만원(집행액 : 308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 말 기준)

○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협력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6월)**

-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사업 및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협력기관 실무자 간담회(6월)**

- 사업 추진 관련 사례 공유 및 실무자 지원 역할 논의

○ **사업추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영상매뉴얼 제작(5~6월)**

○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참여자 질적성과 분석(4~7월)**

- 문헌연구, 서울스몰스파크. 옹심이 참여시민 및 종사자 FGI

○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협력기관(10개소) 현장 모니터링(7월)**

- 사업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 공유, 사업 운영 컨설팅 등

☐ 향후계획

○ **협력기관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간담회** : '20. 8 ~ 9월

○ **사업성과 영상 제작 및 공유(SNS)** : '20. 9~11월

○ **사업 성과 양적 측정 설문조사** : '20. 10~11월

○ **우수사례 공모전** : '20. 10~12월

작성자	지역복지통합본부장:유연희(☎6353-0300) 장애인복지팀장:김혜정(☎321)

3-7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 추진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창업·교육·결혼자금 등 생산적 목적의 저축에 일정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자산형성 및 자립의 토대를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사업대상 : 총 7,355명('20.7.31.기준)

○ 사업내용 :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운영·관리

- 참가자 선발 및 약정 지원, 지역사회 사례관리기관 운영 지원(31개소)
- 저축 관리 및 저축 실적에 따른 매칭 지원금 적립, 만기적립금 심의 및 지급
- 참가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커뮤니티 운영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절차

참가자 선발 ('20.7~10월) ⇨ 약정체결 ('20.11월) ⇨ 저축 및 매칭시작 ('20. 11~12월) ⇨ 사례관리 및 교육 ('20.1~12월) ⇨ 적립금심사및지급 ('20.1~12월)

○ 사 업 비 : 13,164백만원(집행액 : 8,187백만원)

- 일반회계: 1,940백만원(시비100%) / 기금회계: 11,224백만원(시비80%, 민간재원 10억)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2020년 신규 참가자 모집(청년통장 3,000명, 꿈나래 500명)

- 청년통장 13,462명 접수, 꿈나래통장 1,601명 접수(모집기간: 7.6.~7.24.)

○ 약정서류 전산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만기 지급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

- 전자문서 약정체결, 약정자 개인정보 서류 보관기간 단축(10년→5년) 규정 개정
- 만기 후 자급 증빙서류의 사용계획서 대체 및 개인정보 과다요청 개선 위한 운영지침 개정

○ 참가자 저축관리 및 매칭적립금 지원('20.7.31.기준)

- 총412억원(본인저축액 213억원, 매칭지원액 199억원) 적립 및 지원

☐ 향후계획

○ 신규참가자 선발 및 약정체결 : '20. 8~11월

○ 참가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실시 및 자원연계 : '20. 8~12월

○ 참가자 저축관리, 매칭지원금 지원, 적립금 지급 : '20. 8~12월

○ 사례관리기관 운영지원 및 실무자 역량강화 등 : '20. 8~12월

작성자	지역복지통합본부장:유연희(☎6353-0300) 자산형성팀장:이미자(☎331)

3-8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운영

☐ 추진목적

○ 서울시 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 및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 저축액에 일정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자산형성 및 자립의 토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4조)

○ 사업대상 : 총 1,601명('20.7.31.기준)

○ 사업내용 : 장애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3년간 자산형성 지원

- 3년간 본인이 매월 저축하면(10, 15, 20만원 중 택1) 시비 15만원 매칭지원
- 매칭지원 외 사례관리, 금융교육, 자립지원 교육 및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사업절차

참가자 선발 ('20.5~8월)	⇨	약정체결 ('20.8~9월)	⇨	저축 및 매칭시작 ('20.9~12월)	⇨	사례관리 및 교육 ('20.1~12월)

○ 사 업 비 : 4,604백만원(집행액 : 2,284백만원)

- 일반회계: 680백만원(시비100%) / 기금회계: 3,924백만원(시비100%)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2020년 신규 참가자 모집(1,000명)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1,481명 접수(모집기간: 5.6.~5.29.)
- 장애등급 조정(1~2급·일부3급→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가입연령 확대(만15세~만34세→만39세)
- TBS FM라디오 방송(총 46회), 마을버스(23개구, 200여대), 특수학교(29개) 등 홍보강화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방향성 검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진행

○ 참가자 저축관리 및 매칭적립금 지원(총86억, 본인저축액 44억, 매칭지원액 42억)

☐ 향후계획

○ 신규참가자 선발 및 약정체결 : '20.8~ 9월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 : '20. 8~ 10월
○ 참가자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자원연계 : '20. 8~12월
○ 참가자 저축관리, 매칭지원금 지원, 적립금 지급 : '20. 8~12월
○ 사례관리기관 운영지원 및 실무자 교육 등 : '20. 8~12월

작성자	지역복지통합본부장:유연희(☎6353-0300) 자산형성팀장:이미자(☎331)

3-9 서울시 돌봄SOS센터 운영 지원

☐ 추진목적

○ 돌봄SOS센터 사업운영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보편적 공공돌봄서비스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나가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수립 계획(서울시장방침 제126호, '18.07.12)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4항(복지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업대상 : 돌봄욕구를 가진 서울시민, 민간서비스제공기관, 자치구·동

○ 사업내용 : 연구 및 모델 개선, 사업운영 모니터링,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 연구·모델개선: 매뉴얼 개정(발간 8월), 사업발전방안 연구, 전산고도화 지원
- 사업모니터링: 상시(운영실적, 이용만족도, 의견수렴), 현장방문 모니터링
- 서비스품질관리: 제공기관 운영현황 파악과 의견수렴, 지원체계 마련·실행

○ 사업절차

사업운영모델 개선 (매뉴얼 개편 연2회) ⇨ 사업운영 모니터링 (연중상시/ 현장 10월) ⇨ 품질관리 지원사업 ('20. 5~11월) ⇨ 사업발전방안 연구 ('20. 5~12월)

○ 사 업 비 : 213백만원(집행액 : 126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서울시 지원: 추진실행위원회(2회), 실무TF(2회), 업무협의(수시)

○ 총괄계획 수립(2월), 현장 질의 및 건의사항 접수 및 반영 등(수시)

○ 운영매뉴얼 개정 및 전산시스템(생활복지통합전산망) 개편 지원

- 서비스·업무절차·서식 등 수정, 사례 재구성, 질의응답 및 지원사항 추가

○ 사업성과 자료 구축(운영실적, 이용자만족도조사, 돌봄욕구현황조사)

- 실적분석: '19년(7~12월) 보고서 발간, '20년 월별 보고서 발간(총 6회)
- 이용만족: 설문조사(월별 진행 중), 보고서 발간(8월, 12월 발간 예정)
- 돌봄욕구: 신규 20개 자치구 동별 돌봄욕구현황 사전조사 진행(7월)

○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

- 의견수렴(2~3월), 방침 수립(4월), 제공기관 DB구축 및 현황분석(상시)

○ 신규 20개 자치구 선행사업 추진 지원(5~7월)

- 자치구 담당자 교육(7.21~31) 지원, 자치구 설명회 개최 지원, 질의응대

☐ 향후계획

○ 사업 모델 개선(개선 의견 상시 접수, 전산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 '20. 8~12월

○ 사업 성과자료 구축(이용실적 및 사례 분석, 이용자만족도조사, 돌봄욕구) : '20. 8~12월

○ 모니터링 진행(질의 응대 및 건의 접수 상시 진행, 자치구 및 동 현장 방문) : '20. 8~12월

○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관리 지원(네트워크 구축, 실무도움서 발간 등): '20. 8~12월

작성자	지역복지통합본부장:유연희(☎6353-0300) 공공돌봄지원팀장:정은하(☎340)

4. 서울복지교육센터

1. 공공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
2. 현장실무자 양성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3. 서울복지시민학교 시범운영
4.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4-1 공공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

☐ 추진목적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돌봄SOS센터' 추진관련 공무원의 사업이해와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8호(자치행정과-25322, 2018.12.8.)

○ 사업대상 : 자치구,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인력 (연인원 3,862명)

구 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집합)	
	연인원(명)	일수(일)	연인원(명)	일수(일)	연인원(명)	일수(일)
합계	3,862	350	1,392	270	2,470	80
찾동	2,208	160	892	120	1,316	40
돌봄SOS센터	1,654	190	500	150	1,154	40

○ 사업내용 : 직급별 교육과정 설계·운영, 온라인 교육 제작·운영, 교육지원 및 평가 등

○ 사 업 비 : 358백만원(집행액 : 181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20년 찾동, 돌봄SOS센터 교육계획 수립준비 및 일부운영 : '20. 1~3월

- 연간 교육과정 확정 및 강사 섭외 완료, 돌봄SOS센터 교육수행(신규발령자 285명)
- 효율적, 체계적 교육 운영 준비 : 교육 실행 계획, 교육 홍보물 등 연간계약

○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연기 및 변경계획 수립 : '20. 4~6월

- 찾동 교육은 교육TFT 회의(6차)를 통해 온라인·집합교육 축소 및 일정 변경 협의
- 돌봄SOS센터 교육은 1차 자문회의 및 서울시 업무협의를 통해 교육일정 연기('7월)

○ 찾동, 돌봄SOS센터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수행: '20. 5~7월

- 온라인 콘텐츠 제작(13 과목) : 콘텐츠기획회의 (12회) 및 강의촬영(15회): '20.5.7~7.29
- 돌봄SOS센터신규 자치구 돌봄매니저 /돌봄센터장 교육완료(연 285명, 집합 10일)

[돌봄SOS센터 매니저교육]

[온라인 교육컨텐츠 제작]

☐ 향후계획

○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준비 : '20. 8월

○ 온라인 교육생 모집 및 교육운영 : '20. 8~12월

○ 집합 교육생 모집 및 교육운영 : '20. 9~12월

○ 교육 평가 및 데이터 관리, 결과보고 : '20. 12월

작성자	센터장 이수진(☎6353-0280) 담당:김선정(☎284)·김예린(☎285)·신유정(☎288)

4-2 현장실무자 양성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 추진목적

○ 사회복지 현장실무자 대상의 차별적 교육브랜드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실천가 양성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교육네트워크로 사회적 가치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3호(복지분야의 교육 및 자문)

○ 사업대상 : 사회복지 및 유관기관 현장종사자

○ 사업내용 : 현장실무자 대상 실무교육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교육 컨텐츠 개발

- 좋은돌봄인증,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기반 복지실천, 가치융합 리더 등 4개 과정 운영
- '서울복지교육네트워크'를 통한 복지교육설계 공유 및 확산, 실무자 워크숍 운영
- 신규 교육 컨텐츠 개발연구 추진 '서울시 복지직 공무원 보수교육과정 개발 연구'

○ 사 업 비 : 104백만원(집행액 : 44백만원)

☐ 추진실적 ('20. 7월말 기준)

○ 현장실무아카데미 교육

- 과정별 주요방향설정, 교육관련 전문가 인터뷰, 코로나 등으로 인한 온라인교육 기획 논의 등
- 마을지향복지실천가교육과정(총3회,72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코디기본과정(총3회,114명) Seoul-PBL과정(총2회, 42명),복지마이스터스쿨과정(총2회,64명)

○ '서울복지교육네트워크' 운영

- '20년 기관별 교육 공유 및 협력사항 논의
- 기관장 및 실무자간담회 5회 운영
- 서울복지교육네트워크 교육포럼('AC(After Corona)와 사회복지교육'):7/17(금), 유튜브라이브 접속 273명

[온라인공동포럼 포스터]

○ 서울시 복지직 공무원 보수교육과정 개발 연구 진행

- 연구·자문회의(5회) 및 복지직 FGI(6회) 진행을 통한 보수교육 개발 관련 직무 역량 도출

☐ 향후계획

○ 신규교육과정개발 수행(설문조사, SME인터뷰 등) : '20. 8~11월

○ 현장실무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콘텐츠 기획, 제작 : '20. 8~10월

○ 현장실무아카데미 과정별 운영 : '20. 8~11월

○ 서울복지교육네트워크 운영(워크숍 등) : '20. 8~11월

작성자	센터장 이수진(☎6353-0280), 담당:임지영(☎282)·신유정(☎288)·서주희(☎286)

4-3 서울복지시민학교 시범운영

☐ 추진목적

○ 시민을 위한 복지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지인식 및 정보접근성을 제고하여 복지시민 리더를 양성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3항**(복지분야의 교육 및 자문)

○ **사업대상 : 서울시민(일반 시민, 학생 등)**

○ **사업내용 : 찾아가는 시민 복지교육 및 아동청소년 교육 콘텐츠 개발**

- 마을 주민모임, 복지현장 등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복지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시범 운영

○ **사업절차**

교육과정·콘텐츠 기획 ('20. 2~3월) ⇨ 콘텐츠 공모·개발 ('20. 4~9월) ⇨ 찾아가는 복지교육 ('20. 6~10월) ⇨ 성과공유·확산 ('20. 10~11월)

○ **사 업 비 : 50백만원(집행액 : 16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찾아가는 시민 복지교육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 '복지국가, 복지권리, 복지정책, 지식공유 등' 다양한 범주로 교육과정 구성
- 서울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재단 공익법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

※ 5~7월 20회(실인원 223명) 운영, 11월까지 총 40회 운영 목표

[찾아가는 시민교육 홍보포스터]

○ **아동·청소년 복지교육 콘텐츠 개발 기획**

- 유사사업 검토 및 전문가(학계, 현직교사, 유사사업 경력자) 자문(4회)
- 1차년도(2020) 초등 고학년 대상 복지교육 콘텐츠 개발, 향후 대상 확대
- 인권, 정의, 공정 등 기본가치와 복지를 연결, 사례 중심으로 친근하게 접근
- '복지교육연구회' 구성(현직교사) 및 교과과정 연계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 향후계획

○ **찾아가는 복지교육 운영** : '20. 8~11월

○ **복지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적용** : '20. 8~11월

작성자	센터장:이수진(☎6353-0280) 담당:권혜원(☎283)·홍지희(☎287)

4-4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 추진목적

○ 복지관련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민·관 종사자 및 학생, 시민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및 집단지성 창출, 공유가치를 확산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9항(복지관련 자료개발·관리 및 보급)

○ 사업대상 : 사회복지 및 유관분야 민·관 종사자, 대학생 및 시민

○ 사업내용 : 지식·사람 중심 온·오프라인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 복지 및 유관분야 전문가 칼럼, 정책 이슈, 실무노하우, 공모정보 등 지식정보 확산
- 복지현장 실무자 및 예비 사회복지사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
- 서울복지교육센터 운영관련 공지, 수강신청·이력관리 등 운영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절차

플랫폼 개편기획 ('20. 1~2월)	⇨	지식정보 공유·홍보 (연중 상시)	⇨	시스템 구축완료 ('20. 11월)	⇨	성과평가 및 연감발간 ('20. 11월)

○ 사 업 비 : 383백만원(집행액 : 355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복지전문 지식정보 공유 및 사회복지사 학습동아리 지원

- 복지현장 및 일반시민에게 복지 지식, 노하우, 정보 공유(월평균130건)
  (회원 13,000명, 최근1년 방문자53만명(전년대비 50%증가), 누적 콘텐츠 25,900건)
- 복지현장 실무자 학습모임 12개 선정, 5~7월까지 총 33회 288명 운영

○ 공유복지플랫폼 및 서울복지교육센터 홈페이지 통합구축

- 서울복지교육센터 홈페이지(교육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관리 효율화
- 2개 홈페이지 통합구축을 통한 시너지, 콘텐츠 이용율 제고 및 예산절감
- 개발업체 계약체결 및 과업 진행(㈜이노디스, 하이서울브랜드기업)

☐ 향후계획

○ 온·오프라인 지식공유 및 네트워킹 : '20. 8~10월

○ 홈페이지 통합구축 진행 : '20. 8~11월

○ 성과평가, 연감발간 / 개편 홈페이지 오픈 : '20. 11월

작성자	센터장:이수진(☎6353-0280) 담당:권혜원(☎283)·홍지희(☎287)

5. 찾동추진지원단

1.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운영

5-1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운영

☐ 추진목적 : '찾동'의 실행력 지원, 동단위 복지 공공성 강화

○ 찾아가는 복지 · 사례관리 등 공공의 문제해결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복지 거버넌스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사장방침 제244호, 복지정책과-22841호,'14.9.14)

○ 주요역할 : 기획 → 실행 → 평가 및 피드백 등 정책 전 과정의 지원

정책설계 (~'20. 4월)	✚	역량개발 지원, 현장소통, 평가 (~'20. 12월)	➡	콘텐츠 고도화 ('20. 12월)

○ 사 업 비 : 187백만원(집행액 : 121백만원)

☐ 추진실적('20년 7월말 기준)

○ 동단위 사례관리 활성화 지원 : 자치구에 대한 컨설팅 체계 마련

- 사례관리 지역 편차 극복하고 상향 평준화 추진, 구단위 지원체계 구축
- 광역 사례관리 컨설팅 추진체계 완료(대상 4개구 선정, 시 컨설팅단 구성)
- 6월까지 컨설팅 자료 제작 완료, 7월부터 컨설팅 추진 중

○ 주민주도 복지문제 참여 플랫폼 정비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시스템 구축

- 동복지대학 3기 공모 및 선정완료(성동구 등 5개구)
- 동복지대학 교육자료 제작 완료, 6월부터 교육 및 컨설팅 추진 중

○ 찾동 복지분야 업무매뉴얼 개정 : ~ 5월말

- 보편방문 주민 접점강화, 돌봄SOS센터 자료 등 지침 개정 및 보완

☐ 향후계획

○ 동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구 대상 컨설팅 실시(4개구) : '20. 8월~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15개구) 추진 및 구지사협과 연계 강화 추진 : '20. 8월 ~

작성자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 : 황금용(☎2133-7846)

6.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6-1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 추진목적

○ 복지 관련 법률상담·자문 및 공익소송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시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복지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소송지원, 법률자문·상담, 공익입법 활동 수행 등

○ 사업절차

서울시민 권리 보호 및 공익 제고

법률상담·자문 제공		소송 지원		공익(입법) 활동 수행
- 복지법률상담콜(☎1670-0121) 운영 - 복지 관련 문제 검토 및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	- 취약계층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 지원 - 주요 사회·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소송	+	- 법률, 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회의개최 - 복지법률 교육 실시(공무원, 시민 등) - 복지법률안내서(권리집) 등 발간물 출판

○ 사 업 비 : 161백만원(집행액 : 92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공익소송 추진 및 법률 자문·상담

- 공익 소송 50건, 법률자문 177건, 법률상담 912건 수행

○ 공익제고를 위한 대내외 활동

-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 여부 확인 및 언론 홍보

  ⇒ 약 1.5만명 대상자의 선거권 보장에 기여('20. 4월, 총선 기준)

- 취약계층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5~7월, 총 3건)

연번	협약일	대상	주요내용
1	'20.05.27.	금천경찰서	민생 치안 활동 중 발굴 된 취약계층 법률 지원
2	'20.06.24.	서울시위탁가정지원센터	위탁가정아동에 대한 상속채무 법률지원 체계 구축
3	'20.07.29.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 어르신 돌봄기관·종사자를 위한 법률 지원

- 정신장애인 관련 언론보도 기준 마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20.06.19.)

☐ 향후계획

○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후속조치 수행 : '20. 8~12월

○ 복지법률 상담·자문·공익소송 추진 : '20. 1~12월

○ 복지법률교육·토론회·권리집 발간 : '20. 1~12월

작성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 김도희(☎6353-0461) 담당 : 이주영(☎465)

7.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7-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 추진목적

○ 악성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재무관리, 법률구제 및 사회·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재단 정관 제4조 제8항**(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 **개소시기 : '13.7월 개소**(13년 총 6개소 ⇨ 20년 현재 총 15개소)

○ **인력구성 : 총 36명**(센터장1, 금융복지상담관 30명, 행정직 5)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포함 서울시민 모두**

○ **사업내용 : 금융복지상담, 공적채무조정 지원, 금융교육, 토론회, 자료발간 등**

- (가계부채 확대예방) 금융복지 상담전화(☎1644-0120) 운영, 재무상담, 교육 등
- (가계부채 규모관리) 회생법원·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채무조정(파산·회생) 지원
- (복지서비스 연계)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 **사 업 비 : 336백만원(집행액 : 134백만원)**

☐ 추진실적('20. 7월말 기준)

○ **금융복지상담 15,076건**(누적 132,622건), **개인파산·회생 755건 진행**

- (주요 상담영역) 파산면책 71.2%, 정보제공 5.7%, 개인회생 6.4% 등
- (채무조정 지원) 파산면책 717건, 개인회생 38건 등 진행

○ **지역센터 환경개선(중랑센터, 시청센터 및 금천센터)**

- 중랑, 시청센터 각 이전· 확장(1월, 3월), 금천센터 리모델링 추진(8월 예정)

☐ 향후계획

○ **금융복지상담·공적채무조정 지원·금융교육 등 추진 : '20. 12월**

○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 : '20. 9~10월**

○ **개인회생 재도약 법률지원서비스 시행 : '20. 8월**

작성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 박정만(☎6353-0485) 팀장 : 정은정(☎481)

Ⅴ. 보고 안건(정관개정, 예비비 사용 등)

연번	유형	안 건	소관부서
1	정관 개정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경영기획실
2	예비비 사용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경영기획실

1.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7628호, 2020.7.16.공포·시행) 개정의 사업의 범위를 반영하고,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7667호, 2020.7.16.공포·시행) 개정 및 서울시(서울시 공기업담당관-8948, '20.07.22)의 개정조치 요청을 반영하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기존 정관 개정 시 연동조항 개정 누락에 따른 정관 내 오기를 수정하여 정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사업의 범위 확대 변경(안 제4조)

-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8.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9.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 기존 호 이동(제9호→제10호, 제10호→제11호, 제11호→제12호)

○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개정(안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 노동자이사→노동이사

○ 기존 정관 개정 시 연동조항 개정 누락에 따른 오기 수정(안 제12조제1항, 제2항)

- 제8조제3항 → 제8조제4항

○ 이사회 안건 제출권 등 노동이사제 세부지침에 따른 개정(안 제12조제3항)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이사회 안건제출권과 정보열람권을 가진다.(후단 신설)

○ 임원 결격사항 개정(안 제12조2)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사업의 범위), 제6조(정관)
- (재)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37조(정관의 변경)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서울시 공기업담당관-8948, ′20.07.2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항 등) 개정

나.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이사회 의결	→	서울특별시장 승인	→	보건복지부 허가	→	시행
일정	′20.9.		′20.9.		9월중		10월중		10월중

【추진절차 관련 근거】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정관)**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이사회 의결 → 시장 승인 → 보건복지부 허가**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37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첨부

○ 붙임1. 서울시보 제3596호(2020.7.16.(목))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7.16. 일부개정조례 부분 발췌

○ 붙임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 공문

○ 붙임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4.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붙임1】 서울시보 제3596호(2020.7.16.(목))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7.16. 일부개정조례 부분 발췌

◈ 서울특별시조례 제7628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9.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미래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서울시 복지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의 법률 및 금융 복지 서비스를 지원함.
다. 서울시 저소득·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을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조항을 규정함(제4조제8호).
나.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조항을 규정함(제4조제9호).

【붙임2】「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공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

---

1. 공기업담당관-827(2020.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3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가 붙임과 같이 '20. 7.16.자로 공포·시행**되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보내드립니다.

3.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조례 및 세부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숙지하셔서 **임직원 및 이사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영하여 노동이사의 직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1항 및 제59조 제3항,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제1항)

※ 조례 및 세부운영지침 시행일자 : 2020. 7. 16.자

붙 임 :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1부.
2.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3. 조례 개정 공포안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8948 (2020.07.22.) 접수 경영기획실-7569 (2020.07.22.)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대시민공개

【붙임3】 신·구조문 대비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3.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6.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7.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9.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3.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6.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7.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8.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9.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10.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받는 사업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생 략) 1.~2 (생 략) 3. 이사 6명 이상 10명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자이사 1명을 포함한다) 4. (생 략)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노동이사 ----------. 4.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의 임면) ①~② (생 략) ③ 노동자이사는 입·후보 등록신청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④~⑤ (생 략)	**제8조(임원의 임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노동이사----------.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임원의 임기)** ① ----------

현 행	개 정 안
노동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②~④ (생 략)	노동이사---------- ----------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생략)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 ---------- ---------- ----------제8조제4항----- ---------- ② ---------- ---------- ---------- --------제8조제4항----------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이사회 안건제출권과 정보열람권을 가진다.**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 략)	**제12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②~③ (현행과 같음)

【붙임4】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정 2003.12.31.
개정 2004. 6.30.
개정 2005.11.28.
개정 2006. 4. 4.
개정 2008. 5.29.
개정 2010. 1.19.
개정 2010. 8. 5.
개정 2011. 1. 7.
전부 개정 2012.10.11.
개정 2016. 4.25.
개정 2016.10.17.
개정 2017. 3.21.
개정 2017.11.20.
개정 2018. 4.25.
개정 2018. 7.17.
개정 2019. 3.19.
개정 2019. 6.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25., 2019.3.19.〉

제2조(명칭)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6.4.25.〉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3.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6.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7.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9.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대행사업) ① 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17.〕

제6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 1명
3. 이사 6명 이상 10명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자이사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7.3.21.〉
4. 감사 2명

제8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25.〉

②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9.3.19.〉

③ 노동자이사는 입·후보 등록신청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신설 2019.3.19.〉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아래의 당연직 이사가 법률ㆍ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ㆍ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4.25.〉

1.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3.19.〉〕

⑤ 감사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3.19.〉〕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7.17., 2019.3.19.〉

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7.17.〉

③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7.17.〉〕

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7.17.〉〕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사회복지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6.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임원 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4.25.〉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7.17.〕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16.4.25., 2018.7.17.〉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임 · 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임 · 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임 · 직원의 보수) ① 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후단삭제 2016.10.17., 후단신설 2018.7.17., 개정 2019.3.19.〉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20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3.19.〉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삭제 〈2017.3.21.〉
12.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2017.3.21., 2018.4.25.〉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은 제23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26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28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9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신설 2018.7.17.〉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신설 2018.7.17.〉
4.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개정 2018.7.17.〉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7.17.〉〕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기금) 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출연금
2.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업, 금융기관, 민간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기부금
4. 기금 적립금 및 이자 수익금
5.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6.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③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품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7.〉

④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4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7.17.〉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7.〉

제35조(결산)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세입·세출의 결산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소관 주무관청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7.〉

제36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8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20.〉

제40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것으로 정관 또는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내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3.21.〉

② 직제 및 정원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3.19.〉

부 칙 (2003.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7조제3항과 관련하여 최초 이사장 선임시까지의 이사장의 직무는 복지여성국장이 대행한다.

부 칙 (2004.6.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및 직제 개·폐등에 의한 적용) 제7조제4항의 당연직 이사는 법률·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11.28.)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4.4.)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5.29.)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9.)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8.5.)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7.)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11.)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4.25.)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17.)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3.21.)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0.)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25.)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17.)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19.)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6.28.)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11,500,000,000	
현 금	서울특별시	500,000,000	설립출연
	서울특별시	10,000,000,000	추가출연
	서울시복지재단	1,000,000,000	잉 여 금

작성자	경영기획실장:김현대(☎6353-0220) 기획조정팀장:손대규(☎320) 담당:안은정(☎232)

2.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 예비비 사용 사유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의 긴급한 추가 수행요청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

※ 2020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과제 추가 수행 요청(긴급)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13071호(2020. 07. 02))

○ 예비비는 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한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 2020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

▸ 예비비(내부유보금)의 집행은 서울시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한정적으로만 사용가능

□ 예비비 사용에 따른 예산변경

○ 연구과제명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 기　　간 : 2020년 7월 ~ 12월
- 추진내용
  -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소비실태 분석
  - ▸ 생계지원 효과 및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 ▸ 지원에 대한 시민 평가 의견 수렴

○ 사용금액 : 160,000천원(예비비)

(단위 : 천원)

구분(정책사업)	예산현액(변경 전)	전용액		예산현액(변경 후)
		증	감	
예비비(내부유보금)	229,545	-	△160,000	69,545
정책사업비(선도적 복지정책개발)	1,184,416	160,000	-	1,344,416

□ 추진일정

○ 제95회 임시이사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비비 사용 등) 의결 : ′20. 7. 10.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시 승인 : ′20. 7. 14.

○ 연구과제 추진 : ′20. 7~12월

〔참고〕 관련조례 등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①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신설 2019.9.26.>

작성자	경영기획실장:김현대(☎6353-0220) 기획조정팀장:손대규(☎320) 담당:김세준(☎360)